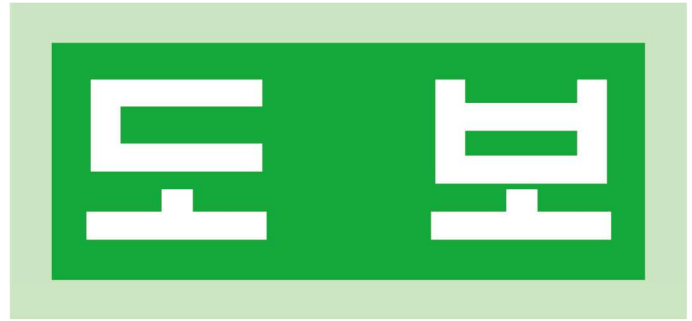


강원특별자치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131 호

2025. 6. 5(목)

조 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6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6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6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	1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7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1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7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1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72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	1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73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74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75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76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77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	3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78호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3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79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80호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81호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82호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83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3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84호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39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85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86호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4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87호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88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4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89호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4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90호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4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91호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회 람								
--------	--	--	--	--	--	--	--	--

발행: 대 변 인 실 (TEL: 033-249-2054, FAX: 033-249-409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92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5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93호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 폐지조례 ... 5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94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95호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5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96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57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97호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0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98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599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 6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00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 65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01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68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02호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73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560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74

규 칙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0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6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1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9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2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83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3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03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4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104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5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2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06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업 업무 위탁 수행기관 지정 고시 113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07호	강릉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15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08호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 118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09호	계촌천 하천점용허가(간척교) 고시 187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10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평창 계촌천 인도교) 고시 188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7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189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7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90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7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91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94호	2024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 공고 192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902호	강원특별자치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200

시 군 행 정

춘천시 고시 제2025-296호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 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 203
춘천시 공고 제2025-1122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26호 소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205
춘천시 공고 제2025-1140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대로3류3호선, 공간시설: 광장10호) 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열람공고 207
원주시 공고 제2025-1418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1-22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210
강릉시 고시 제2025-201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주문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 211
삼척시 고시 제2025-129호	삼척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광장)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216
영월군 공고 제2025-921호	영월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안) 공람공고 218
평창군 공고 제2025-856호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 공고 221

조 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 경 호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6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209명이며”를 “4,219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760명”을 “3,76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442명”을 “448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 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공 립 의 각급학교
총 계	4,21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3,743				
3급	4		4		
4급	18	1	17		
5급 이하 소계	3,721				
전문경력관 계	4				
연구직 계	18				
연구사 소계	18				
교육전문직원 계	44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6		19	17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12				
별정직 계	5				
4급 상당	1				
5급 상당 이하 소계	4				

◇ 개정이유 ◇

- 「2025년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 확정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국가 정책인 유보통합 추진 인력 배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개정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4,209명 → 4,219명(증 10명)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 3,760명 → 3,764명(증 4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442명 → 448명(증 6명)
-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별표3)
 - 일반직: 3,739명 → 3,743명(증 4명)
 - 5급 이하 소계: 3,717명 → 3,721명(증 4명)
 - 교육전문직원: 442명 → 448명(증 6명)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406명 → 412명(증 6명)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 경 호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68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과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방향
2.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관한 사항
4.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홍보에 관한 사항
5.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2.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사업
3.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확산으로 사이버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은 학업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사이버폭력 예방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5조)
- 사업에 관한 사항(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8조)
- 신고체계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제9조~제10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 경 호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69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3. 교육자료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
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6. 교육 및 연구·조사
7.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연구·조사
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
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 활동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사업 및 제6조의 교원연수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

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제1조~제2조)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제4조)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제5조)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제7조)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제8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 경 호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70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3. “냉·온수기”란 학교에 설치·관리되는 법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냉·온수기를 말한다.
4. “정수기”란 학교에 설치·관리되는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수기를 말한다.
5. “급수설비”란 학교의 장이 관리하는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급수설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관리 및 수질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 먹는물 현황에 관한 사항
3.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냉·온수기 및 정수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질검사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먹는물 수질검사
2. 급수설비의 세척·갱생(「수도법」 제3조제29호에 따른 갱생을 말한다)·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
3. 그 밖에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도시설 개선 협의) 교육감은 노후 수도관 교체, 직결급수 등 수도시설 개선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및 해당 시·군과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조치사항) 학교의 장은 먹는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기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폐쇄
2. 음용 금지 안내판 부착
3. 수질기준 부적합 원인 분석과 기기·시설 및 운영 관리 개선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
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제1조~안 제2조)
-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
- 수도시설 개선 협의에 관한 사항(제6조)
- 조치사항(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8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신 경 호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71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학생 교육을 위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강원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감독자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부모교육)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학생의 올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6.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5조의 학부모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 오늘날 교육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학부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학부모는 단순한 보호자를 넘어 자녀 교육과 진로, 인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교육 주체이므로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녀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
- 학부모교육에 관한 사항(제5조)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8조)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72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 군장병 안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兵),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제1호의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 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말한다.
5.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 추진 등) ①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재난본부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한 기관

②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군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유형별 안전 및 복구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강원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장비

제6조(협력체계 강화) 도지사는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군부대,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73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속공무원”이란”을 ““소속 공무원”이란”으로,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를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출장소,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8호 및 제9호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공무원은”을 “소속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아니면서”로,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지역본부”로,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강원특별자치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공무원”을 “합의제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제1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공무원의”를 “소속 공무원의”로, “소속공무원에게”를 “소속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속공무원”을 각각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우수·모범공무원”을 “우수·모범·효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4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4조의2(중전의 제14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를 “(위원의 임기)” 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제1항 중 “필요할 때마다” 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의” 를 “위원회의 회의” 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74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실비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소요되는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75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국·산업국·문화체육국·산림환경국·건설교통국·미래산업국·관광국”을 “경제국·산업국·건설교통국·미래산업국·관광국·해양수산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자치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한다.

제8조제17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공무원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대응에 관한 사항
- 9. 비정규직(공공부문을 말한다) 정규직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 14. 국가 사무이양·강원자치도와 시군간 기능 배분
- 15. 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특별자치추진단)”을 “(특별자치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추진단장”을 “특별자치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4호 중 “비정규직노동자(공공부문 포함)”을 “비정규직노동자(공공부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 국방경제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1.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산업생태계 구축

제21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소방기관에 대한 감사·감찰에 관한 사항

제3장제6절의 제목 “특수대응단 및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 및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수대응단과 환동해특수대응단”을 각각 “119특수대응단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42조 중 “특수대응단과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동해특수대응단장”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제6장제12절의 제목 “강원특별자치도수산자원연구원”을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새 품종의 시험개발과 양식기술 보급을 위해”를 “대서양연어 품종의 국산화 연구 및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해”로, “강원특별자치도수산자원연구원(이하 “수산자원연구원”이라 한다)”을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이하 “스마트연어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자원연구원”을 “스마트연어연구원”으로 한다.

제92조 중 “수산자원연구원”을 “스마트연어연구원”으로 한다.

제93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강원형 연어산업 기반(기반시설을 포함한다) 구축
5. 양식품종의 질병연구, 수질관리 및 수산물 안전 검사

제6장제15절(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절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제99조의2(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지원, 통일교육 등을 위해 강원자치도에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이하 “통일플러스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통일플러스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47에 둔다.

제99조의3(센터장) 통일플러스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9조의4(소관사무)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 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 및 통일문화 프로그램 추진
4. 그 밖에 통일플러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수대응단 “을 “119특수대응단 “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 “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 “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특수대응단 “을 “119특수대응단 “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 “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 “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특수대응단 “을 “119특수대응단 “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 “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 “으로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 2]

119특수대응단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의 위치 및 관할구역

(제36조의2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119특수대응단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 3829	춘천시 · 원주시 · 홍천군 ·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일원
119환동해특수대응단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항길 144(남항진동)	강릉시 · 동해시 · 태백시 · 속초시 · 삼척시 · 고성군 · 양양군 일원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76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6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7% 이내	20% 이내	36% 이내	31% 이내	5% 이상	1%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7% 이내	73% 이상	28% 이내	72% 이상

3. 소방공무원

구분	소방정 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율	1% 이내	3% 이내	9% 이내	11% 이내	18.5% 이내	34% 이내	23.5%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9급상당
비율	10% 이내	65% 이내	20% 이내	—	5% 이상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지역 본부	경제자유구 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8	1,757	137	4,593	18	39	444	60
정무직 계	4	-						
도지사	1	1						
감사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11	-						
4급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10	9	1					
일반직 계	2,253	-						
1급	1	1						
2급	2				1	1		
2 ~ 3급	2	1	1					
3급	14	12		1		1		
3 ~ 4급	3	1	1					1
4급	109	72	10	7	1	3	15	1
5급 이하 소계	2,105	1,379	123	126	16	34	372	55
전문경력관 소계	17	6	1	5			5	
연구직 계	237	-						
연구관	48			43			5	
연구사	189	7		139			43	
지도직 계	33	-						
지도관	9			9				
지도사	24			24				
소방공무원 계	4,463	-						
소방감								
소방정	27	7		20				
소방령 이하 소계	4,436	260		4,172			4	
교육공무원 계	47	-						
총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4			14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77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의회 및 집행기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강원특별자치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2. “공용차량”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행·관리하는 업무용 자동차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의 수리시 자동차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

1.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소방자동차(「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말한다)의 경우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제7호·제8호·제10호·제12호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78호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분산에너지의 안정적 생산·보급·소비 체계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전력수급 안정화에 관한 사항
4.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술, 투자 수요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도지사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과 별도로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비용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관련 기반 구축 비용

3.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 교류 비용

4. 분산에너지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79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문화창달” 을 “강원문화 발전” 으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문화산업부문

제3조제1항제2호 중 “강원문화 창달” 을 “강원문화 발전” 으로 한다.

제6조 중 “심사위원회에” 를 “심사위원회에서” 로, “도지사” 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상장과 부상” 을 “상장(상패를 포함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80호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을 “제6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환수 및 관리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중 “도지정유산”을 “도지정문화유산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수행하는”을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홍보”를 “교육·홍보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지사가”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환수활동에”를 “환수활동을 위하여 도지사가”로, “사항”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81호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제강점 하” 를 “일제 강점하” 로, “3.1만세운동” 을 “3·1운동” 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일제강점기” 를 “일제 강점기” 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2. 강원특별자치도 출신 독립운동가
3.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제3조(중전의 제4조) 중 “수립·추진하여야” 를 “수립·추진해야”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립운동 선양사업” 을 “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독립운동의” 를 “독립운동가”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설치” 를 “설치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전시관련” 을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전시 관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원” 을 “지원사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독립운동가 추모, 독립운동 기념 및 독립운동 이념의 계승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원 등)” 을 “(보조금 교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단체·법인” 을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이나 관련 단체·법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82호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준용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및 자립 지원비

5.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외로 전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83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촉진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가치 있는 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관광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개선 및 기반 정비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4. 농어업·농어촌 관련 홍보
5. 농어업·농어촌 조사·연구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84호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의 중분류에 따른 약용작물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
3.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약용작물 생산·저장·가공 기술의 개발 및 도입 사업
2. 약용작물 생산·저장·가공 기술의 보급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약용작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활성화 사업
2. 약용작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위한 기계·설비 구매 및 포장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85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5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치 농업기계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86호

강원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로 종자,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농약을 기본 품목으로 하며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필요한 소모성 영농자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 지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지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한다.

② 지원 범위·단가·방법 등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사업점검) 도지사는 필수농자재를 지원할 경우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87호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내 축산업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매몰·화학적 처리를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포감, 무력감, 죄책감, 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처분 참여자 등(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정한다)에게 가축 살처분 등 후 심리적·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재해구호법」 제33조에 따른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3.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4. 그 밖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88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3. 산림복지시설 조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
3. 산림복지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
4.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및 양성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89호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활용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활용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분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재활용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과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
3. 재활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공공기관 또는 재활용 관련 기업·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 및 인증
2. 재활용 분야 기술 개발
3. 재활용시설의 개선 및 생산성 향상

4. 재활용제품의 국내외 홍보

5. 재활용제품 디자인 및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6. 그 밖에 재활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활용제품 판매 촉진) 도지사는 재활용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제품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재활용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0호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협약인증습지도시”란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증된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현명한 이용”이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습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협약인증습지도시의 인증 및 재인증 추진 등 습지 보전과 협약에 따른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습지보전 및 관리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습지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습지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및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오수·하수·폐수 처리
2. 환경친화적 농림어업 육성
3.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4. 습지보전 역량강화 사업
5. 그 밖에 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습지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천계획의 수립·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3. 습지정비계획 관련 자문

4. 강원특별자치도 내 우수습지 지정

5. 그 밖에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것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습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의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르되, 의원의 임기 만료·사직 등에 따라 의원 신분이 상실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회의 일시·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활용)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우수습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우수습지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습지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습지를 포함한 물, 에너지, 토양 등과 관련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2. 습지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습지복원 및 조성, 빗물 저감시설 등 물순환

4.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협약인증습지도시등과의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6.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브랜드 활용 상품의 생산과 유통구조 확립

7. 그 밖에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관계 행정기관,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습지목록, 실천계획 추진 실적 등 관련 정보공개에 노력해야 한다.

제18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1호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포상금 지급액)” 을 “(포상금 지급기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의3(중전의 제1호) 중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의2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

2의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

4.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0만원

② 동일한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중전의 제8조) “하고, 제7조의”를 “하고,”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신고인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하여야”를 “필요한 조치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 및 접수와 포상금”을 “신고포상금”으로,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를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 등의 과정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2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말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발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현황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과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점검·정비를 위한 진단 장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3호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 폐지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4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농촌진흥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4. “농업경영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다.
5.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6.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7.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8.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도지사는 법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치유”를 “치유농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5호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토양에 환원되게 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파쇄를 지원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안전처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이하 “안전처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불법소각 금지 교육 및 홍보
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지원
4.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5. 관계 기관 등의 협력
6.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 처리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부산물을 안전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시·군 및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6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진흥, 문화예술 향유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않는다.

-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특정 분야의 문화예술 행사
-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민속놀이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시군,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 2. 지원할 지역축제의 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금액
- 3. 지역축제의 지원 신청 방법
- 4. 제13조에 따른 지역축제 평가단의 평가 계획, 대상 및 기준
- 5. 주관단체의 지원 조건 이행 여부 확인 및 지원 비용 정산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시장·군수가 관할 구역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에 대해 각종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군 이외의 주관단체가 지역축제에 대해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축제장소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를 통해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지원 결정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지역축제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지원 비용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역축제가 개최되기 전까지 지원해야 한다.

제6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격이 유사한 지역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지원할 지역축제의 추천
3.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할 지역축제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 이내,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축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 나. 축제 관련 전문가
 - 다. 그 밖에 지역축제 지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안건별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 또는 공개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고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축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지역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한 실무적 평가를 위해 지역축제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단원은 지역축제 평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단은 현지답사,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역축제 평가단의 운영을 지역축제 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주관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7호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3. 기업 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6. 관광 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 단체 간 관광 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관광 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 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하고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9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재단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정명령)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8호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15명” 을 “18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지역도시과장, 수산정책과장, 양식산업과장, 어업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원 2명
2. 어업인단체 1명
3. 연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599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여론조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의회와 의장의 책무) ①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 언론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연구회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

제5조(적용제외 대상) 의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6조(조사 방법 등) ① 의장은 제4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과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여론조사를 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 전화 병행)
2. 자동응답시스템(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조사
5. 우편조사

6.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7. 그 밖의 조사 방법

②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설문지의 구성) 의장은 제6조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설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 자체 홍보 채널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방송 매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④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강원자치도 및 교육청에 정책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600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

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일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의정활동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등은 의회 소속으로 재직기간에 수행한 직무에만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신청)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 약속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6조(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산정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해야 할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유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및 환수액 감면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과 환수 및 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사항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의원인 위원이 임기 중에 징계·사직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상실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준용규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의 고지, 의견 진술 및 수당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601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호·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동에 대한 신고

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

2.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공익제보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익제보를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

제4조(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

자치도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익제보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4.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인사 중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및 국제기구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해당 직위를 기준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공익제보자등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익제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제9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도지사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위반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의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제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구술제보를 받을 경우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의 확인을 거쳐 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는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없다.

⑥ 공익제보자가 변호사의 대리 없이 익명으로 제보를 한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공익제보의 처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제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두어 공익제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접수된 공익제보의 배분 및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공익제보의 현황관리 및 분석
3.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지원정책 연구
4.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민간기업 및 사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공익제보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도지사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공익제보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제보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공익제보자에게 알린 후 해당 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11조(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는 공익제보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공익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공익제보자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제보자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제13조(불이익조치의 금지)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다)는 공익제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 가. 지방세의 부과
 -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거나 증거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2. 제보 내용이 신문·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었거나 공표 및 공개된 사실일 경우
3. 제보 내용과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의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경우
4.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의 지연에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을 경우
5. 관계 행정기관 등에 위법행위를 신고할 의무를 가진 사람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경우
6. 공익제보가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강원자치도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지사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상금의 지급 방법, 절차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포상금) ① 도지사는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강원자치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구조금)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도지사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한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등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제보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⑤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강원자치도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구조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보상금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등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한다.

제18조(보상금등의 상환 및 환수) ① 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 원인이 되는 공익제보 대상 행위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의 행위로 인한 경우

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원자치도에 상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금액을 강원자치도에 상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해야 하고, 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 한다.

1.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9조(포상)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지원)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제21조(보조금 지급) 도지사는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홍보 등) 도지사는 공익제보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제보 지원 제도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3조(공익제보 관련 민원의 우선 처리) 도지사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민원을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3장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제보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2025. 5. 21.)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602호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도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특별자치도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우회가 도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봉사과 공익증진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특별자치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원, 사업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60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및 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 자원의 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4조에 따른 교육문화관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분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관 도서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장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
 2.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
 3. 폐기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4. 그 밖에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
-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 기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 등에 홍보해야 한다.

제8조(표창 등)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

- 도서 기증은 지식 자원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임. 이에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고 지식 자원의 공유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및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4조)
-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제5조)
- 도서관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제6조)
- 홍보에 관한 사항(제7조)
- 표창에 관한 사항(제8조)

규 칙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5.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0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을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징수관·경리관 :”을 “징수관·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을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군”을 “시군”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징수관·경리관 :”을 “징수관·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을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다. 지출원: 관련 업무팀장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납부고지서란 하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안내말씀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과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2. 산정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2(부담금의 산정기준)
3. 부담금의 강제징수: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영수필통지서			납부고지서		
발행번호 제 호		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납 부 자	주 소				
	성 명				
세입과목		(관) (항) (목)			
건 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금 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시장 · 군수(직인) 수 입 일부인					
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이오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직인) 수 입 일부인					

(비고) 안내말씀은 앞면 영수증 뒷면에 인쇄한다.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납 부 자	주 소		
	성 명		
세입과목		(관) (항) (목)	
건 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금 액		원	
납부기한		까지	
납부장소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 입 일부인 ○○은행 ○○지점 ○○시장 · 군수 귀하			

안 내 말 씀

1. 부과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2. 산정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2(부담금의 산정기준)
3. 부담금의 강제징수: 부담금 납부의무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 하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5 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장소나 전국 우체국과 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5. 이의신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재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4. 15.)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1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도청이전추진단·재정협력담당관”을 “도청이전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경지역과장·재정협력담당관”을 “접경지역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
16. 고향사랑기부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7항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22.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운영 지도·감독

제9조제5항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를 삭제한다.

17. 방사능 누출사고 등 원전 업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정보화정책과”를 “지능정보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정책과장”을 “지능정보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비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노무관리 및 정규직 전환 등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제6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치분권 업무 총괄 및 기획에 관한 사항
7.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관, 도·시군 협의체 운영

제10조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정책과장”을 “지능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8.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 기부금품 심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특별자치추진단에 두는 과)” 를 “(특별자치국에 두는 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자치추진단” 을 “특별자치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단장” 을 “국장”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상공인과를” 을 “소상공인과·국방경제추진단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상공인과장” 을 “소상공인과장·국방경제추진단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경제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중전의 제3항)제14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 및 제20호(중전의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신규펀드 기획

20. 그 밖에 경제진흥정책 총괄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2조제6항(중전의 제5항)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국방경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업 판로지원
2. 산학연군 방산 네트워크 구성
3. 국방경제 분야 정책 발굴
4. 국방분야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5. 방위산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6. 도내 국방중소기업 맞춤형 통합지원
7.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8. 방위산업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9. 강원국방벤처센터 운영·관리 및 활성화

제13조제5항제4호 중 “유치 추진” 을 “조성” 으로 한다.

제15조제9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필수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현안 대응

제18조제7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 발굴 및 추진
21.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제19조제1항 중 “에너지산업과” 를 “수소산업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산업과장” 을 각각 “수소산업과장”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소특화단지 추진단 구성·운영
4. 수소특화단지 육성전략 기획 및 추진
5. 수소 기회발전특구 지정 확대 대응
6. 수소기업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제19조제4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추진

제19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폐광지역 주민(학생) 교육 지원 사업

제20조제4항제21호 중 “해양 레포츠 및 어촌민속문화·축제 지원·관리”를 “해양 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8호 중 “어촌종합계획개발사업”을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육성 지원

20. 어촌 전통문화·역사 보전·계승 및 산업육성

2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 수립

제26조제3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스마트팜 통합시스템·문헌정보실·기관”을 “문헌정보실 및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스마트팜 안정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12.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13. 스마트팜 예측시스템 개발 및 모델실증

14. 스마트농업전문가 교육 및 육성

15. 스마트팜 통합시스템 운영 관리

제26조제6항제6호 중 “작물 병해충 예찰”을 “병해충 신속진단, 정밀예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요 작물 문제병해충 발생생태 구명 및 친환경적 방제법 개발

12. 소면적 재배작물 농약미등록 병해충 발굴 및 농약직권 등록

13. 유용 미생물 선발, 제제화 및 농업적 이용연구

제26조제7항제2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발효 미생물 은행 및 DB 구축

9. 미생물의 기능성 소재 개발

11. 농산물 기능성 원료 및 소재 발굴

12. 천연물 이용에 관한 연구

13. 천연물·식품 성분 분석 및 지원

제26조제8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급중 종자 정선 및 보급

7. 종자 정선시설 유지 및 관리

8. 보급중 재배 현장지원 및 컨설팅

제3장제6절의 제목 중 “특수대응단 및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 및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44조 중 “특수대응단장과 환동해특수대응단장”을 “119특수대응단장과 119환동해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을 “(119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환동해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의 하부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제8호 중 “지원 및 연구비 관리”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 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업”을 “사업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학정보공시 및 고등교육통계조사 관리·운영

제47조제4항제8호 중 “입학 및 학생정원”을 “학생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연구실 안전관리

제47조제6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취업성과 홍보 및 취업통계 작성

제75조의 제목 “(강원특별자치도수산자원연구원)”을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강원특별자치도수산자원연구원”을 “강원특별자치도스마트연어연구원”으로 한다.

제5장제7절에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의 센터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119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 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제1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하며, 제11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특수대응단”을 “119특수대응단”으로 한다.

④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행정부장관 북평옥계사업부장, 망상사업부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기획행정부장관 북평옥계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망상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4. 15.)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2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표 (총괄)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8	1,757	137	4,593	18	39	444	60
정무직	계	4	1						3
별정직	계	11	10	1					
일반직	계	2,253	1,472	136	139	18	39	392	57
연구직	계	237	7		182			48	
지도직	계	33			33				
소방직	계	4,463	267		4,192			4	
교원직	계	47			47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표 (총괄)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8	1,757	137	4,593	18	39	444	60
정무직	계	4	1						3
	도지사	1	1						
	감사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11	10	1					
	4급상당	소계	1	1					
	5급상당	소계	7	6	1				
	6급상당	소계	2	2					
	8급상당	소계	1	1					
일반직	계	2,253	1,472	136	139	18	39	392	57
	1급	소계	1	1					
	2급	소계	2			1	1		
	2~3급	소계	2	1	1				
	3급	소계	14	12		1	1		
	3~4급	소계	3	1	1				1
	4급	소계	109	72	10	7	3	15	1
	5급	소계	428	335	20	15	9	33	13
	6급	소계	803	514	53	38	17	142	33
	7급	소계	611	411	35	43	7	104	7
	8급	소계	216	106	10	20	1	74	2
	9급	소계	47	13	5	10		19	
	전문경력 관	소계	17	6	1	5		5	
연구직	계	237	7		182			48	
	연구관	소계	48		43			5	
	연구사	소계	189	7	139			43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농촌지도	9		9				
	지도사	농촌지도	24		24				
소방직	계	4,463	267		4,192			4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4급	소방정	27	7	20				
	5급	소방령	126	31	95				
	6급	소방경	317	42	272			3	
	6급	소방위	490	51	438			1	
	7급	소방장	825	85	740				
	8급	소방교	1,507	45	1,462				
	9급	소방사	1,171	6	1,165				
교원직 계		47			47				
	총장	총장	1		1				
	교수	교수	32		32				
	조교	조교	14		14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표 (총괄)

직종 · 직급	직 렬	합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경제자유 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048	1,757	137	4,593	18	39	444	60
정무직	계	4	1						3
	도지사	1	1						
	감사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1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1							1
별정직	계	11	10	1					
	4급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5급상당 소계	7	6	1					
	국제관계 대사	1	1						
	비서관	5	4	1					
	정책특보	1	1						
	6급상당 소계	2	2						
	비서	2	2						
	8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일반직	계	2,253	1,472	136	139	18	39	392	57
	1급 소계	1	1						
	관리관 · 별정	1	1						
	2급 소계	2				1	1		
	이사관	2				1	1		
	2~3급 소계	2	1	1					
	이사관 · 부이사관	2	1	1					
	3급 소계	14	12		1		1		
	부이사관	14	12		1		1		
	3~4급 소계	3	1	1					1
	부이사관 · 서기관	3	1	1					1
	4급 소계	109	72	10	7	1	3	15	1

	행정	47	25	8	6	1	2	4	1
	기술	14	14						
	행정·기술	39	33	2	1		1	2	
	행정·별정								
	기술·농업연구	2						2	
	기술·녹지연구	1						1	
	기술·수의연구	1						1	
	기술·어촌지도	1						1	
	기술·해양수산연구	1						1	
	기술·소방정	1						1	
	행정·전문경력관가군								
	행정·기술·별정								
	행정·기술·해양수산연구	1						1	
	기술·농업연구·수의연구	1						1	
5급	소계	428	335	20	15	3	9	33	13
	행정	206	154	17	10	3	5	7	10
	공업	9	9						
	녹지	14	8					6	
	수의	5	5						
	농업	11	9		1			1	
	해양수산	9	9						
	보건	2	2						
	환경	12	12						
	시설	36	32		1		2		1
	의무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10	10						
행정·사무서	2	2						
행정·숙기	1		1					
행정·공업	9	9						
행정·농지	2	1					1	
행정·농업	9	7	1	1				
행정·해양수산	5	4					1	
행정·보건	5	5						
행정·환경	5	5						
행정·시설	23	17	1	1		1	1	2
행정·방송통신	4	4						
행정·별정								
행정·전문경력관 가군								
행정·학예연구	2	1					1	
공업·시설	7	3					4	
공업·환경	1	1						
공업·방송통신								
공업·운전	1	1						
농업·수의								
농업·시설	1	1						
농업·농업연구	3	2					1	
농지·환경	2	2						

녹지·녹지연구	1						1	
수의·수의연구	7						7	
해양수산·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보건·간호	3	3						
보건·약무								
보건·약무·간호	1	1						
환경·시설	2	1				1		
시설·방재안전	2	2						
시설·학예연구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농업연구	1						1	
행정·시설·학예연구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공업·환경·시설	1	1						

	의무·보건·간호	1	1						
	환경·농지·환경연구·농지연구	1						1	
	의무·보건·간호·약무	1	1						
6급	소계	803	514	53	38	6	17	142	33
	행정	298	186	46	15	4	7	23	17
	세무	9	8						1
	사회복지	3	3						
	전산	12	8		3		1		
	사서	1		1					
	숙기	2		2					
	공업	33	21		6		1	3	2
	농업	26	22					3	1
	농지	33	21					11	1
	수의	56	11					45	
	해양수산	28	21		4			3	
	보건	11	9				1		1
	식품위생	1	1						
	간호	4	2		2				
	환경	21	19				1		1
	시설	98	76		2		4	9	7
	방재안전								
	방송통신	14	11			1	1	1	
	운전	12	4		3	1		4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9	8						1
	행정·사회복지	8	7						1
	행정·사서	1	1						
	행정·농지	4	2					2	
	행정·공업	6	6						
	행정·농	2	2						

업								
행정·해양수산	6	4	1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8	8						
행정·시설	10	8					2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시설관리	1			1				
행정·전문경력관 나군	1	1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시설	1	1						
전산·농업								
사회복지·보건	1	1						
공업·농업	1			1				
공업·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농업·농지	1					1		
농업·해양수산	2	2						
농업·농업연구	6						6	
농업·수의								
수의·수의연구								
보건·간호	4	4						

보건·약 무	1	1							
보건·환 경									
사서·기 록연구	2	2							
시설·녹 지	1	1							
시설·방 재안전	3	3							
해양수산 · 시설									
해양수산 · 어촌지 도	5	5							
해양수산 · 해양수 산연구	4						4		
행정·공 업·환경	2	2							
행정·농 업·식품 위생	1	1							
행정·농 업·환경	1	1							
행정·농 업·시설	1	1							
행정·농 업·농업 연구	1						1		
행정·시 설·방재 안전	1	1							
공업·농 업·전문 경력관나 군	1						1		
공업·운 전·기계 운영	14						14		
농업·수 의·농업 연구	1						1		
농업·농 업연구· 전문경력 관나군									

	사무운영	4	4						
	통신운영	5	3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농림운영	1						1	
	선박기관 운영								
	선박항해 운영								
	통신운영 · 전기운 영								
	기계운영 · 전기운 영	2						2	
	기계운영 · 운전	5	1	1				3	
	선박항해 운영 · 선 박기관운 영	1	1						
7급	소계	611	411	35	43	4	7	104	7
	행정	226	167	15	11	3	5	19	6
	세무	5	5						
	사회복지	8	8						
	전산	11	10		1				
	사서	1			1				
	숙기	5		5					
	공업	48	24	2	9		1	12	
	농업	22	14		2			6	
	녹지	22	8					14	
	수의								
	해양수산	17	8		4			5	
	보건	11	11						
	식품위생								
	간호	1	1						
	환경	14	14						
	시설	69	53	1				14	1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16	13		1			2	
	운전	19	3	2	5	1		8	

위생	2	2						
행정·세 무	2	2						
행정·사 회복지	4	4						
행정·전 산	8	7	1					
행정·녹 지	1						1	
행정·공 업	6	5					1	
행정·농 업	3	3						
행정·보 건								
행정·환 경	2	2						
행정·시 설	12	11				1		
행정·방 송통신	1	1						
행정·해 양수산	1	1						
행정·별 정								
행정·사 무운영	1	1						
전산·시 설	1	1						
전산·방 송통신	3	2	1					
농업·해 양수산								
농업·농 업연구	1						1	
농업·농 촌지도								
공업·환 경	1	1						
공업·보 건	1	1						
공업·시 설	7	5	1				1	
공업·운 전	3			1			2	

공업·방 송통신	1	1						
공업·시 설관리	1			1				
해양수산 ·시설	2	2						
해양수산 ·어촌지 도	1	1						
해양수산 ·해양수 산연구	2						2	
환경·녹 지	1	1						
환경·시 설	2	2						
녹지·시 설								
보건·간 호	3	2		1				
보건·약 무	1	1						
보건·환 경	1	1						
보건·사 회복지								
사서·기 록연구								
시설·방 재안전	1	1						
행정·공 업·환경	2	2						
행정·공 업·방재 안전	1	1						
공업·시 설·방재 안전								
공업·운 전·기계 운영	9						9	
보건·환 경·시설								
사무운영	10	4	4	2				
도목운영								

	전기운영	1						1	
	통신운영	1		1					
	기계운영	3		1				2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농림운영								
	사육운영	2						2	
	사무운영 · 시설관 리	3		1	2				
	기계운영 · 공업								
	기계운영 · 시설관 리	1			1				
	기계운영 · 운전	4	2		1			1	
	기계운영 · 전기운 영	1						1	
8급	소계	216	106	10	20	3	1	74	2
	행정	81	56	6	3	2		13	1
	사회복지	1	1						
	전산	2	2						
	사서								
	숙기	3		3					
	방호								
	공업	22	5		6			11	
	녹지	5						5	
	농업	5						5	
	해양수산	16	12		2			2	
	시설	24	10					14	
	방송통신	5	4		1				
	환경	4	4						
	보건	1	1						
	운전	16		1	7	1	1	6	
	시설관리								
	행정·전 산	1	1						

행정·사회복지								
행정·공업	1			1				
행정·환경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2	2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사무운영	1							1
행정·시설관리								
공업·환경	1	1						
공업·방송통신	1	1						
공업·운전	2						2	
공업·시설	1						1	
농업·농업연구	1						1	
농업·기계운영								
녹지·시설								
환경·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6						6	
공업·운전·기계운영	6						6	
사무운영								
통신운영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열관리운영								
	사육운영								
	기계운영 · 공업								
	기계운영 · 전기운영								
	기계운영 · 시설관리								
	기계운영 · 운전								
	선박항해 운영 · 선박 기관운영								
9급	소계	47	13	5	10			19	
	행정	8	4	3	1				
	사회복지	1	1						
	숙기	2		2					
	공업	8			2			6	
	농업	3						3	
	방송통신	2	2						
	환경								
	운전	5			4			1	
	위생								
	해양수산	7	4		2			1	
	방재안전								
	시설관리	3	1					2	
	사무운영								
	통신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선박항해 운영								
	선박기관 운영								
	농림운영								

		사육운영											
		행정·환경	1	1									
		행정·사무운영											
		공업·시설관리											
		공업·운전	5								5		
		사무운영·시설관리											
		기계운영·전기운영											
		기계운영·열관리운영											
		기계운영·농림운영											
		기계운영·운전	2				1				1		
		통신운영·전기운영											
		선박항해운영·선박기관운영											
	전문경력관	소계	17	6	1	5					5		
		가군											
		문화재연구관											
		나군	9	3		5					1		
		기자재관리원											
		농기계교육교관	4			4							
		비상대비원	1	1									
		향토사편찬원	1	1									
		직업훈련교사	1								1		

		VTR촬영 편집원	1		1			
		열관리운 영원	1	1				
		다군	8	3	1		4	
		의전관리 원	1	1				
		비상대비 원						
		VTR영상 편집원	1		1			
		열관리운 영원						
		사육운영 원	2				2	
		기록발간 물관리원	2	2				
		건설기계 정비원	1				1	
		기자재관 리원	1				1	
	연구직	계	237	7	182		48	
	연구관	소계	48		43		5	
		녹지연구	2				2	
		농업연구	21		20		1	
		보건연구	8		8			
		수의연구	1				1	
		해양수산 연구	1				1	
		환경연구	10		10			
		보건연구 · 환경연 구	5		5			
	연구사	소계	189	7	139		43	
		녹지연구	13	1			12	
		농업연구	61		56		5	
		보건연구	37		37			
		수의연구	13				13	
		학예연구	6	3			3	
		해양수산 연구	9	1			8	
		환경연구	42		40		2	

		기록연구	2	2					
		보건연구 · 환경연구	6			6			
지도직	계		33			33			
	지도관	농촌지도	9			9			
	지도사	농촌지도	24			24			
소방직	계		4,463	267		4,192		4	
	4급	소방정	27	7		20			
	5급	소방령	126	31		95			
	6급	소방경	317	42		272		3	
	6급	소방위	490	51		438		1	
	7급	소방장	825	85		740			
	8급	소방교	1,507	45		1,462			
	9급	소방사	1,171	6		1,165			
교원직	계		47			47			
	총장	총장	1			1			
	교수	교수	32			32			
	조교	조교	14			14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5.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3호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5. 13.)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4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체계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와 방법 그 밖의 적극행정 공무원 도움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원내용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결정 등이 요구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도지사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절차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선임 지원		
징계의결요구개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요구사유				
구비서류		☐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입증서류 ☐ 변호인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소속 :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신청내용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 지원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 제출			
사건번호		고소·고발 등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개요					
구비서류		☐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서류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의 서류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기타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 번	신청자		신청 일	관할 징계위 원회	징계의결 요구 사유	지원결 정일	지원내용	징계 결과	지원 취소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 번	신청자		신청 일	사건관 할 및 사건번 호	사 건 개 요	지원결 정일	지원내용	수사 및 소송 결과	지원 취소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2025. 4. 15.)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김 진 태



2025년 6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 규칙 제3345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로, “규정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술부문 :”을 “학술부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연예술부문 :”을 “공연예술부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시예술부문 :”을 “전시예술부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통예술부문 :”을 “전통예술부문:”으로, “가무”를 “노래와 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학부문 :”을 “문학부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체육부문 :”을 “체육부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향토문화연구부문 :”을 “향토문화연구부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금고이상”을 “금고 이상”으로 한다.

8. 문화산업부문: 영화, 게임, 출판,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추천시”를 “추천 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사위원회”를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를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해제 된다”를 “해촉(解囑)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문화창달”을 “문화발전”으로 한다.

제10조 단서 중 “일자”를 “날짜”로 한다.

제11조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업무담당”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06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업 업무 위탁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의 업무에 대한 위탁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김종훈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도곡동)

2. 위탁기간 : 2025.5.30. ~ 2027.5.29.(2년간)

3. 위탁업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4. 행정사항

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등록업무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5항에 따라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07호

강릉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된 강릉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산8-1번지 외 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강릉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연구시설) 사업
○ 명칭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가. 대지면적 : 36,073㎡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6,073	100.0	
건축용지	16,391	45.4	
편의·운동시설용지	1,083	3.0	
도로시설용지	6,563	18.2	
녹지용지	12,036	33.4	

다. 건축계획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비고
기정	8,379.28	12,128.97	11,917.56	
철거	5,581.00	6,910.00	6,910.00	
증축	7,236.82	8,485.17	8,485.17	
변경 후	10,035.10	13,704.14	13,492.73	

라. 세부 건축계획

동별	용도	연면적(㎡)	층수	비고
주1동	사무실, 연구실 등	1,111.65	지하1층 - 지상2층	
주2동	참가리비종묘생산시설	2,240.00	지상1층 - 지상2층	
주6동	펌프실	80.76	지하1층 - 지상1층	
주10동	기기 및 창고동	480.00	지상1층	
주11동	펌프동	96.00	지상1층	
주12동	관사동	1,210.56	지상1층 - 지상2층	
주16동	연어 전주기 산업화 HUB	3,899.09	지상1층	
주17동	샬먼뱅크, 기술기업 교육연계 센터	4,586.08	지상1층 - 지상2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사항	비고
1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산8-1	임	34,762	34,762	강원특별자치도	－	
2		산8-11	임	982	982	강원특별자치도	－	
3		144-27	철	7,556	329	국(국토교통부)	－	
합 계(3필지)				43,300	36,073	－	－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토지포함) 및 지하시설물 등 (해당없음)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08호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고시

1. 「관광진흥법」 제52조제6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 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온천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제5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청(관광문화과)에 비치하고 열람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가. 관광단지명 :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나. 위 치 :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

다. 지 정 면 적 : 기정) 2,730,114.2㎡ , 변경) 2,730,587.8㎡ (증 473.6㎡)

라. 조성계획면적 : 기정) 2,730,114.2㎡ , 변경) 2,730,587.8㎡ (증 473.6㎡)

마. 사 업 기 간 : 기정) 2013년 ~ 2025년, 변경) 2013년 ~ 2030년 (증 5년)

바. 사 업 비 : 기정) 3,400억원, 변경) 4,100억원 (증 700억원)

사. 사업시행자 : (주)새서울레저 (변경없음)

아. 변 경 사 유

- 확정측량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지정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연장
- 오수처리용량 확대 및 처리계획 변경, 건축물 색채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 조성계획(변경) 도서, 지형도면 : 게재생략 (양양군청 관광문화과에 비치)

차. 조성계획(변경) 조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온천개발계획(변경), 토지조서 : 별지참조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 변경 조서

명 칭		부지면적(㎡)			건축물규모					비고 (객실)
					건축연면적(㎡)			층수	동	
변경 전	변경 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730,114.2	2,730,587.8	473.6	194,218.68	208,490.00	14,271.32		193	497실
공공편의시설지구	공공편의시설지구	68,068.0	68,067.4	-0.6	5,331.00	5,331.00			3	
주차장	주차장	16,939.0	16,939.0		4,411.00	4,411.00		1	2	
저고도돌풍경고장치	저고도돌풍경고장치	300.0	300.0							
도로A	도로A	12,016.0	12,016.0							
도로B	도로B	10,143.0	10,142.4	-0.6						
도로C	도로C	25,655.0	11,802.0	-13,853.0						
도로D	도로D	612.0	612.0							
	도로E		13,853.0	13,853.0						
창고	창고	2,403.0	2,403.0		920.00	920.00		1	1	
숙박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245,851.2	246,044.2	193.0	127,031.68	141,303.00	14,271.32		168	497실
관광호텔	관광호텔	62,280.0	62,280.0		22,924.00	22,924.00			6	112실
관광호텔 A	관광호텔 A	25,976.0	25,976.0		18,100.00	18,100.00		6	2	80실
관광호텔 B	관광호텔 B	36,304.0	36,304.0		4,824.00	4,824.00		2	4	32실
휴양콘도미니엄	휴양콘도미니엄	102,810.2	102,865.4	55.2	61,927.00	61,927.00			39	262실
설해온천/골프텔	설해온천/골프텔	20,730.0	20,785.2	55.2	20,937.00	20,937.00		6	2	140실
마운틴스테이	마운틴스테이	19,670.2	19,670.2		7,022.00	7,022.00		2	10	35실
설해수립	설해수립	45,257.0	45,257.0		31,173.00	31,173.00		6	14	74실
휴양콘도 E	휴양콘도 E	17,153.0	17,153.0		2,795.00	2,795.00		2	13	13실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80,761.0	80,898.8	137.8	42,180.68	56,452.00	14,271.32		123	123실
설해별담A1	설해별담A1	1,037.0	1,037.0		1,202.92	1,691.00	488.08	2	3	3실
설해별담A2	설해별담A2	1,998.0	2,132.8	134.8	2,474.05	3,841.00	1,366.95	2	6	6실
설해별담B1	설해별담B1	3,644.0	3,644.0		4,227.04	4,367.00	139.96	2	9	9실
설해별담B2	설해별담B2	589.0	589.0		683.24	1,170.00	486.76	2	1	1실
설해별담B3	설해별담B3	2,411.0	2,411.0		2,796.76	4,338.00	1,541.24	2	6	6실
설해별담C1	설해별담C1	3,958.0	3,958.0		4,379.40	6,349.00	1,969.60	2	10	10실
설해별담C2	설해별담C2	4,083.0	4,083.0		4,573.23	7,669.00	3,095.77	2	9	9실
설해별담D1	설해별담D1	4,628.0	4,628.0		4,891.53	6,960.00	2,068.47	2	11	11실
설해별담D2	설해별담D2	2,164.0	2,164.0		2,335.64	3,591.00	1,255.36	2	6	6실
설해별담E	설해별담E	2,698.0	2,698.0		3,041.87	4,901.00	1,859.13	2	8	8실
더 하우스	더 하우스	1,980.0	1,983.0	3.0	395.00	395.00		2	2	2실
숙박D	숙박D	37,678.0	37,678.0		8,170.00	8,170.00		2	38	38실
숙박E	숙박E	13,893.0	13,893.0		3,010.00	3,010.00		2	14	14실
상가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40,136.0	40,136.0		31,813.00	31,813.00			3	
아울렛몰	아울렛몰	34,209.0	34,209.0		27,813.00	27,813.00		5	1	
지역특산물상가	지역특산물상가	3,330.0	3,330.0		3,200.00	3,200.00		5	1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2,597.0	2,597.0		800.00	800.00		2	1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1,018,858.0	1,018,824.3	-33.7	16,732.00	16,732.00			9	

명 칭		부지면적(㎡)			건축물규모					비고 (객실)
					건축연면적(㎡)			층수	동	
변경 전	변경 후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27홀 골프장(대중제)	27홀 골프장(대중제)	588,109.0	588,090.9	-18.1	8,128.00	8,128.00			4	
골프코스(27홀)	골프코스(27홀)	442,127.0	442,127.0							
카트로	카트로	40,158.0	40,158.0							
연못(POND)	연못(POND)	83,569.0	83,569.0							
클럽하우스/지원시설	클럽하우스/지원시설	21,647.0	21,628.9	-18.1	7,891.00	7,891.00		2	1	
휴게소(티 하우스)	휴게소(티 하우스)	608.0	608.0		237.00	237.00		1	3	
18홀 골프장(대중제)	18홀 골프장(대중제)	381,383.0	381,383.0		119.00	119.00			1	
골프코스(18홀)	골프코스(18홀)	286,986.0	286,986.0							
카트로	카트로	33,443.0	33,443.0							
연못(LAKE)	연못(LAKE)	54,607.0	54,607.0							
휴게소(티 하우스)	휴게소(티 하우스)	1,015.0	1,015.0		119.00	119.00		1	1	
묘포장	묘포장	5,332.0	5,332.0							
체육관	체육관	6,662.0	6,662.0		3,600.00	3,600.00		2	1	
힐링가든	힐링가든	21,064.0	21,064.0							
박물관	박물관	2,055.0	2,055.0		672.00	672.00		2	1	
미술관	미술관	16,888.0	16,888.0		3,400.00	3,400.00		2	1	
예지물창고	예지물창고	2,697.0	2,681.4	-15.6	813.00	813.00		1	1	
기타시설지구	기타시설지구	1,357,201.0	1,357,515.9	314.9	13,311.00	13,311.00			10	
원형녹지	원형녹지	720,589.0	720,589.0							
27홀 원형녹지	27홀 원형녹지	314,492.0	314,492.0							
18홀 원형녹지	18홀 원형녹지	173,313.0	173,313.0							
관광단지 원형녹지	관광단지 원형녹지	232,784.0	232,784.0							
기타녹지	기타녹지	602,064.0	602,399.0	335.0						
27홀 기타녹지	27홀 기타녹지	231,763.0	231,763.0							
18홀 기타녹지	18홀 기타녹지	313,822.0	313,822.0							
관광단지 기타녹지	관광단지 기타녹지	56,479.0	56,814.0	335.0						
직원숙소	직원숙소	6,185.0	6,185.0		4,360.00	4,360.00		4	1	
관광단지 지원시설	관광단지 지원시설	28,363.0	28,342.9	-20.1	8,951.00	8,951.00		4	9	
경비실	경비실				64.00	64.00		1	1	
장비창고A	장비창고A				1,422.00	1,422.00		2	1	
장비창고B	장비창고B				1,763.00	1,763.00		2	1	
직원숙소A	직원숙소A				954.00	954.00		2	1	
LPG저장소	LPG저장소				100.00	100.00		1	1	
직원숙소B	직원숙소B				4,348.00	4,348.00		4	1	
세차장	세차장				100.00	100.00		1	1	
그린모아창고	그린모아창고				100.00	100.00		1	1	
유류저장소	유류저장소				100.00	100.00		1	1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편입토지조서(변경)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합 계		607필지		2,730,587.8	2,730,587.8	－	－
1	동호리	407	임	1,924.0	1,92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	동호리	408	체	5,259.0	5,25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	동호리	412 - 1	체	4,201.0	4,20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	동호리	413 - 1	체	3,454.0	3,45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	동호리	413 - 4	체	581.0	5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	동호리	413 - 7	임	14,236.0	14,23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	동호리	414	체	1,441.0	1,44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	동호리	415 - 1	체	4,127.0	4,12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	동호리	420	체	10,170.0	10,17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	동호리	434	체	719.0	71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1	동호리	434 - 1	임	16,847.0	16,84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	동호리	435	체	453.0	4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	동호리	436	체	946.0	94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4	동호리	436 - 1	임	9,666.0	9,66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	동호리	438	체	1,255.0	1,25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	동호리	440	체	6,075.0	6,07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7	동호리	445	체	224.0	22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	동호리	446	체	1,711.0	1,71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	동호리	446 - 1	체	526.0	52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0	동호리	446 - 2	임	2,065.0	2,06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1	동호리	448	체	41,951.0	41,95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	동호리	448 - 1	임	2,467.0	2,46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3	동호리	448 - 2	임	872.0	87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4	동호리	448 - 3	임	1,224.0	1,22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5	동호리	450	체	1,646.0	1,64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6	동호리	450 - 1	체	233.0	23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7	동호리	450 - 3	체	1,033.0	1,03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28	동호리	450 - 4	임	9,696.0	9,69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9	동호리	450 - 5	임	1,105.0	1,1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0	동호리	450 - 6	임	92.0	9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1	동호리	452	채	526.0	52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	동호리	454	채	2,190.0	2,19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3	동호리	454 - 1	임	12,676.0	12,67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4	동호리	457	채	1,543.0	1,54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	동호리	457 - 2	채	610.0	61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	동호리	457 - 4	임	11,528.0	11,52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7	동호리	460	채	19,425.0	19,42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	동호리	461	채	704.0	70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	동호리	462 - 2	채	16,086.0	16,08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0	동호리	463	채	399.0	39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1	동호리	463 - 1	채	14.0	1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2	동호리	496	채	2,843.0	2,84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3	동호리	496 - 2	채	959.0	95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4	동호리	496 - 4	채	3,281.0	3,2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	동호리	502 - 2	채	3,854.0	3,85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6	동호리	502 - 6	채	681.0	6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	동호리	502 - 7	채	15,639.7	15,639.7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8	동호리	502 - 4	도	3,632.0	3,63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9	동호리	502 - 8	도	81.0	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	동호리	502 - 9	도	1,529.0	1,52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1	동호리	502 - 10	도	1,075.0	1,07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2	동호리	502 - 11	도	178.5	178.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3	동호리	502 - 12	도	764.3	764.3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4	동호리	502 - 5	도	155.0	15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5	동호리	503	채	5,961.0	5,96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	동호리	503 - 6	채	3,947.0	3,94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57	동호리	507	답	1,235.0	1,23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8	동호리	507 - 6	답	677.1	677.1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	동호리	507 - 7	답	96.0	9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0	동호리	507 - 5	채	121.0	12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1	동호리	508	답	873.0	87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2	동호리	508 - 1	채	205.0	2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3	동호리	509	전	74.0	7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4	동호리	509 - 1	임	131.0	13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5	동호리	510	전	79.0	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6	동호리	510 - 1	임	14,643.0	14,64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7	동호리	510 - 165	임	3.0	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8	동호리	510 - 166	임	2,700.6	2,700.6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9	동호리	510 - 167	임	2,763.0	2,76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0	동호리	510 - 6	대	11.0	1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1	동호리	510 - 168	대	797.0	79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2	동호리	510 - 169	대	7,307.3	7,307.3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3	동호리	510 - 7	채	18,320.0	18,320.0	권기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51
74	동호리	510 - 8	채	48,758.0	48,75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5	동호리	510 - 9	임	980.0	98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6	동호리	510 - 10	임	1,465.0	1,46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7	동호리	510 - 11	임	1,140.0	1,14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8	동호리	510 - 12	임	3,324.0	3,32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9	동호리	510 - 13	채	6,995.0	6,9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0	동호리	510 - 15	채	30,610.0	30,610.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81	동호리	510 - 16	채	29,187.0	29,18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2	동호리	510 - 17	채	45,374.0	45,37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3	동호리	510 - 18	채	14,968.0	14,96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4	동호리	510 - 20	채	275,416.0	275,41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5	동호리	510 - 21	임	74.0	74.0	국(국토교통부)	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86	동호리	510 - 22	임	323.0	32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7	동호리	510 - 23	임	2,730.0	2,73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8	동호리	510 - 24	임	3,377.0	3,37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9	동호리	510 - 25	임	2,448.0	2,44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0	동호리	510 - 26	임	170.0	17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1	동호리	510 - 27	임	6.0	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2	동호리	510 - 170	임	555.9	555.9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3	동호리	510 - 28	채	45,035.0	45,03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4	동호리	510 - 171	채	34.0	3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5	동호리	510 - 172	채	12,284.0	12,28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6	동호리	510 - 173	채	327.2	327.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7	동호리	510 - 174	채	19,361.8	19,361.8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8	동호리	510 - 29	임	113.0	11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9	동호리	510 - 34	임	486.0	48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0	동호리	510 - 175	임	10,600.8	10,600.8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1	동호리	510 - 40	채	5,549.0	5,54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2	동호리	510 - 43	임	7,459.0	7,459.0	권기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51
103	동호리	510 - 44	임	7,709.0	7,709.0	권기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51
104	동호리	510 - 45	임	9,094.0	9,09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5	동호리	510 - 46	임	3,401.0	3,40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6	동호리	510 - 47	임	6,087.0	6,08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7	동호리	510 - 48	채	501.0	50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8	동호리	510 - 54	임	14,164.0	14,16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9	동호리	510 - 56	임	11,677.0	11,677.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110	동호리	510 - 57	임	16.0	16.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111	동호리	510 - 58	임	10,762.0	10,762.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112	동호리	510 - 70	채	23,308.0	23,30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13	동호리	510 - 71	임	199.0	19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14	동호리	510 - 73	임	1,392.0	1,39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15	동호리	510 - 74	임	851.0	85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16	동호리	510 - 75	임	95.0	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17	동호리	510 - 76	임	2,293.0	2,29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18	동호리	510 - 77	채	324.0	32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19	동호리	510 - 78	임	94.0	9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0	동호리	510 - 79	임	1,242.0	1,24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1	동호리	510 - 80	임	350.0	35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2	동호리	510 - 81	임	459.0	45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3	동호리	510 - 82	임	5,853.0	5,8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4	동호리	510 - 83	임	115.0	11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5	동호리	510 - 85	임	63,476.0	63,47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6	동호리	510 - 86	임	528.0	52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7	동호리	510 - 87	임	3,856.0	3,85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8	동호리	510 - 88	임	301.0	30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9	동호리	510 - 89	채	1,382.0	1,38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0	동호리	510 - 91	임	970.0	97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1	동호리	510 - 92	임	6,860.0	6,86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2	동호리	510 - 94	임	3,767.0	3,76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3	동호리	510 - 96	채	11,791.0	11,79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4	동호리	510 - 100	임	15.0	1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5	동호리	510 - 101	임	31,744.0	31,74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6	동호리	510 - 103	채	3,246.0	3,24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7	동호리	510 - 109	임	509.0	50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8	동호리	510 - 114	임	4,212.0	4,21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9	동호리	510 - 115	임	2,009.0	2,00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40	동호리	510 - 116	임	1,571.0	1,57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41	동호리	510 - 117	임	2,395.0	2,3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42	동호리	510 - 118	임	4,227.0	4,22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43	동호리	510 - 119	임	504.0	50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44	동호리	510 - 120	임	506.0	5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45	동호리	510 - 121	임	23,095.0	23,0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46	동호리	510 - 124	임	2,102.0	2,10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47	동호리	510 - 129	임	15,339.0	15,33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48	동호리	510 - 130	임	1,463.0	1,46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49	동호리	510 - 131	임	479.0	4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0	동호리	510 - 132	임	5,628.0	5,62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1	동호리	510 - 133	임	18.0	1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2	동호리	510 - 134	임	862.0	86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3	동호리	510 - 135	임	194.0	19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4	동호리	510 - 136	임	11.0	1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5	동호리	510 - 137	임	212.0	21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6	동호리	510 - 138	임	578.0	57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7	동호리	510 - 139	임	36.0	3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8	동호리	510 - 146	임	147.0	14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9	동호리	510 - 147	임	435.0	43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0	동호리	510 - 149	채	81.0	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1	동호리	510 - 176	채	173.3	173.3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2	동호리	510 - 150	임	130.0	13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3	동호리	510 - 152	채	68.0	6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4	동호리	510 - 153	채	20,598.0	20,59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5	동호리	510 - 154	채	71.0	7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6	동호리	510 - 155	채	176.0	17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7	동호리	510 - 156	임	2,167.0	2,16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8	동호리	510 - 157	임	2,786.0	2,78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9	동호리	510 - 158	임	62.0	6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70	동호리	510 - 159	임	162.0	16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71	동호리	510 - 160	임	18,340.0	18,34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72	동호리	510 - 161	임	269.0	26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73	동호리	511	전	217.0	21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74	동호리	511 - 1	임	857.0	85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75	동호리	512	임	393.0	39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76	동호리	512 - 1	구	41.6	41.6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77	동호리	512 - 2	구	27.2	27.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78	동호리	512 - 3	구	17.9	17.9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79	동호리	512 - 4	구	41.2	41.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0	동호리	512 - 5	답	875.2	875.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1	동호리	512 - 6	답	253.2	253.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2	동호리	512 - 7	답	150.0	15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3	동호리	512 - 8	답	603.2	603.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4	동호리	513	묘	205.0	2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5	동호리	514	전	205.0	2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6	동호리	514 - 1	도	1,296.0	1,29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7	동호리	515	전	132.0	13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8	동호리	516	묘	136.0	13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9	동호리	529 - 4	채	8,712.0	8,71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0	동호리	529 - 31	채	87.0	8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1	동호리	529 - 32	채	5.0	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2	동호리	564	대	19,670.2	19,670.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3	동호리	산231	임	13,983.0	13,98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4	동호리	산296	임	22,089.0	22,08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5	동호리	산296 - 4	임	787.7	787.7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6	동호리	산296 - 3	임	2,451.5	2,451.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7	동호리	산297	임	168.0	16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8	동호리	산297 - 1	임	216.5	216.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9	동호리	산300	임	397.0	39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00	동호리	산300 - 1	임	1,550.0	1,55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01	동호리	산300 - 2	임	1,587.0	1,58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202	동호리	산300 - 3	임	7,547.7	7,547.7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03	동호리	산300 - 4	임	44,364.5	44,364.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04	동호리	산300 - 5	임	1,257.2	1,257.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05	동호리	산300 - 6	임	242.0	24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06	동호리	산300 - 7	임	576.1	576.1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07	동호리	산300 - 8	임	1,308.2	1,308.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08	동호리	산300 - 9	임	803.8	803.8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09	동호리	산300 - 10	임	334.1	334.1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10	동호리	산301	임	1,158.0	1,15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11	동호리	산301 - 1	임	594.7	594.7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12	밀양리	1	전	1,088.0	1,088.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13	밀양리	2	답	387.0	387.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14	밀양리	3	답	2,324.0	2,324.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15	밀양리	4	채	1,262.0	1,26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16	밀양리	4 - 19	채	960.0	96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17	밀양리	4 - 20	채	45.0	4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18	밀양리	4 - 21	채	320.0	32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19	밀양리	4 - 22	채	12,136.9	12,136.9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0	밀양리	4 - 23	채	0.2	0.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1	밀양리	4 - 2	대	22.0	2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2	밀양리	4 - 24	대	2,667.5	2,667.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3	밀양리	4 - 8	임	27,439.0	27,43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4	밀양리	4 - 25	임	58.0	5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5	밀양리	4 - 26	임	831.5	831.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6	밀양리	4 - 27	임	345.9	345.9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7	밀양리	4 - 28	임	1,377.0	1,37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8	밀양리	4 - 9	임	8,149.0	8,14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9	밀양리	4 - 10	채	777.4	777.4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30	밀양리	4 - 11	도	141.0	14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231	밀양리	4 - 29	도	3.0	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32	밀양리	4 - 30	도	2,108.9	2,108.9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33	밀양리	6	답	383.0	38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34	밀양리	7	답	902.0	90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35	밀양리	8 - 1	답	1,950.0	1,95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36	밀양리	8 - 2	답	2,595.0	2,5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37	밀양리	9	답	307.0	30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38	밀양리	10	답	3,322.0	3,322.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39	밀양리	11 - 1	답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40	밀양리	11 - 2	답	1,871.0	1,87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41	밀양리	12	답	3,058.0	3,05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42	밀양리	12 - 1	전	9,730.0	9,73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43	밀양리	13 - 1	답	2,896.0	2,896.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44	밀양리	14	전	578.0	57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45	밀양리	15	전	502.0	50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46	밀양리	16	전	288.0	28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47	밀양리	17 - 1	전	1,587.0	1,58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48	밀양리	17 - 2	전	559.0	55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49	밀양리	17 - 3	도	1,990.0	1,99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50	밀양리	17 - 4	전	281.0	2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51	밀양리	17 - 5	도	7.0	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52	밀양리	17 - 6	도	16.0	1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53	밀양리	18	도	843.0	84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54	밀양리	25 - 1	답	721.0	72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55	밀양리	25 - 2	도	6,872.0	6,87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56	밀양리	26 - 1	답	1,805.0	1,805.0	권혁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57	밀양리	98 - 1	답	3,712.0	3,71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58	밀양리	98 - 4	도	751.0	75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59	밀양리	106 - 1	답	116.0	11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260	밀양리	106 - 4	답	3.0	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61	밀양리	106 - 5	도	6,658.0	6,65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62	밀양리	107 - 1	답	450.0	45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63	밀양리	108 - 1	답	1,669.0	1,66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64	밀양리	109 - 1	전	16.0	1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65	밀양리	110	도	456.0	45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66	밀양리	111 - 1	답	4,426.0	4,42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67	밀양리	112	전	291.0	291.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68	밀양리	113	답	1,054.0	1,054.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69	밀양리	114 - 1	답	1,752.0	1,75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70	밀양리	115 - 1	전	66.0	6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71	밀양리	116	도	1,184.0	1,18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72	밀양리	117	도	73.0	7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73	밀양리	119 - 1	답	2,542.0	2,54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74	밀양리	120 - 1	답	1,104.0	1,10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75	밀양리	120 - 2	답	3,418.0	3,418.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76	밀양리	120 - 4	답	33.0	3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77	밀양리	120 - 5	답	122.0	12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78	밀양리	121	도	5,925.0	5,92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79	밀양리	122	도	245.0	24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80	밀양리	123 - 1	답	357.0	35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81	밀양리	125 - 1	답	1,564.0	1,564.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82	밀양리	125 - 2	도	1,953.0	1,9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83	밀양리	126 - 1	답	1,454.0	1,454.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84	밀양리	127 - 1	답	1,395.0	1,3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85	밀양리	127 - 2	도	1,111.0	1,11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86	밀양리	128	전	2,588.0	2,58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87	밀양리	129 - 1	전	1,114.0	1,11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88	밀양리	130 - 1	도	599.0	59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289	밀양리	131 - 1	답	1,494.0	1,494.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90	밀양리	132	전	1,531.0	1,53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91	밀양리	133 - 1	답	4,615.0	4,615.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92	밀양리	134	답	1,762.0	1,76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93	밀양리	135	묘	334.0	33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94	밀양리	136	임	317.0	31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95	밀양리	137	전	169.0	16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96	밀양리	138	전	2,420.0	2,42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97	밀양리	141 - 3	전	63.0	6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98	밀양리	143	전	3,812.0	3,81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99	밀양리	144	임	701.0	70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00	밀양리	144 - 1	전	833.0	83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01	밀양리	145	전	2,264.0	2,26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02	밀양리	146	답	5,537.0	5,53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03	밀양리	147	전	397.0	39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04	밀양리	148 - 1	답	896.0	89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05	밀양리	148 - 2	도	3,131.0	3,13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06	밀양리	148 - 3	답	142.0	14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07	밀양리	149	전	1,898.0	1,89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08	밀양리	150 - 1	전	496.0	496.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09	밀양리	150 - 2	전	165.0	165.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10	밀양리	150 - 3	전	119.0	119.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11	밀양리	150 - 4	전	331.0	331.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12	밀양리	150 - 5	전	347.0	347.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13	밀양리	150 - 6	전	2,569.0	2,569.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14	밀양리	150 - 7	전	311.0	311.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15	밀양리	150 - 8	전	446.0	446.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16	밀양리	151 - 1	답	2,631.0	2,63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17	밀양리	151 - 2	도	810.0	81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318	밀양리	152	답	3,078.0	3,07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19	밀양리	153	답	1,937.0	1,93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0	밀양리	154	전	512.0	51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1	밀양리	155	전	1,091.0	1,09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2	밀양리	156	전	106.0	1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3	밀양리	157	전	99.0	9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4	밀양리	158	전	69.0	6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5	밀양리	159	전	595.0	5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6	밀양리	160	전	1,306.0	1,3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7	밀양리	161 - 1	전	1,071.0	1,07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8	밀양리	162 - 1	전	1,574.0	1,57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9	밀양리	163 - 1	전	304.0	30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30	밀양리	164	도	1,921.0	1,92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31	밀양리	165 - 2	전	1,878.0	1,87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32	밀양리	166 - 1	전	241.0	24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33	밀양리	167 - 1	답	810.0	810.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34	밀양리	167 - 2	도	2,307.0	2,30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35	밀양리	168	전	2,529.0	2,52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36	밀양리	169	전	1,012.0	1,01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37	밀양리	169 - 3	전	205.0	2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38	밀양리	309 - 17	구	428.0	42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39	밀양리	309 - 18	구	580.0	58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40	밀양리	309 - 19	구	645.0	64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41	밀양리	309 - 13	구	262.0	26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42	밀양리	309 - 14	구	3,668.0	3,66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43	밀양리	309 - 15	구	7,259.0	7,25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44	밀양리	309 - 16	구	59.0	5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45	밀양리	산36 - 1	임	6,542.0	6,54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46	밀양리	산36 - 2	도	4,463.0	4,46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347	밀양리	산41 - 1	임	3,174.0	3,17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48	밀양리	산41 - 2	도	1,884.0	1,88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49	밀양리	산42 - 1	임	7,636.0	7,63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0	밀양리	산42 - 2	도	1,686.0	1,68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1	밀양리	산43 - 1	임	7,636.0	7,63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2	밀양리	산43 - 2	도	496.0	49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3	밀양리	산48	임	13,686.0	13,68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4	밀양리	산49	임	8,727.0	8,72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5	밀양리	산50 - 1	임	8,379.0	8,3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6	밀양리	산51	임	8,628.0	8,62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7	밀양리	산53	임	694.0	69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8	밀양리	산54	임	10,596.0	10,59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9	밀양리	산54 - 1	임	1,805.0	1,8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0	밀양리	산54 - 3	임	283.0	28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1	밀양리	산55 - 1	임	4,264.0	4,26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2	밀양리	산55 - 2	도	198.0	19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3	밀양리	산56	임	1,322.0	1,32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4	밀양리	산56 - 1	임	1,223.0	1,22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5	밀양리	산56 - 2	임	3,306.0	3,3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6	밀양리	산57 - 1	임	2,876.0	2,87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7	밀양리	산57 - 2	도	298.0	29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8	밀양리	산58 - 1	도	2,579.0	2,5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9	밀양리	산58 - 2	임	992.0	99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70	밀양리	산59 - 1	임	3,174.0	3,17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71	밀양리	산59 - 2	도	2,281.0	2,2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72	밀양리	산60	임	2,182.0	2,18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73	밀양리	산61 - 1	임	15,074.0	15,07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74	밀양리	산61 - 2	도	298.0	29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75	밀양리	산62	임	7,246.0	7,24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376	밀양리	산63	임	8,305.0	8,3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77	밀양리	산64	임	14,579.0	14,5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78	밀양리	산65	임	3,967.0	3,96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79	밀양리	산66 - 1	도	2,777.0	2,77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0	밀양리	산66 - 2	임	2,281.0	2,2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1	밀양리	산67 - 1	임	16,066.0	16,06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2	밀양리	산67 - 2	도	2,182.0	2,18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3	밀양리	산68	임	8,033.0	8,03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4	밀양리	산70 - 1	임	64,661.0	64,66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5	밀양리	산70 - 2	도	3,471.0	3,47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6	밀양리	산70 - 3	도	99.0	9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7	밀양리	산71 - 1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8	밀양리	산71 - 2	도	5,989.0	5,98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9	밀양리	산71 - 3	임	165.0	16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0	밀양리	산71 - 4	임	3,306.0	3,3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1	밀양리	산71 - 5	임	1,620.0	1,62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2	밀양리	산71 - 6	도	1,251.0	1,25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3	밀양리	산72	임	18,843.0	18,84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4	밀양리	산73 - 1	임	30,977.0	30,97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5	밀양리	산73 - 2	도	99.0	9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6	밀양리	산73 - 3	임	3,238.0	3,23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7	밀양리	산74	임	9,620.0	9,62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8	밀양리	산75	임	13,917.0	13,91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9	밀양리	산75 - 1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00	밀양리	산78	임	12,397.0	12,39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01	밀양리	산78 - 1	임	99.0	9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02	밀양리	산79	임	16,487.0	16,48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03	밀양리	산79 - 1	임	6,995.0	6,9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04	밀양리	산79 - 3	임	10,950.0	10,95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405	밀양리	산79 - 4	임	4,868.0	4,86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06	밀양리	산80 - 1	임	27,699.0	27,69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07	밀양리	산80 - 2	도	3,074.0	3,07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08	밀양리	산80 - 3	임	2,182.0	2,18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09	상양혈리	140 - 5	채	6.0	6.0	권기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51
410	상양혈리	140 - 6	채	276.0	276.0	권기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51
411	상양혈리	154	채	307.0	30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12	상양혈리	154 - 3	채	14,144.0	14,14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13	상양혈리	154 - 4	채	37,384.0	37,38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14	상양혈리	154 - 6	채	13,053.0	13,0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15	상양혈리	154 - 7	임	226.0	226.0	국(국토교통부)	0
416	상양혈리	154 - 8	채	3,103.0	3,10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17	상양혈리	154 - 9	채	4.5	4.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18	상양혈리	154 - 10	임	267.0	26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19	상양혈리	154 - 11	도	1,123.0	1,12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20	상양혈리	154 - 32	도	39.1	39.1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21	상양혈리	154 - 12	임	511.0	51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22	상양혈리	154 - 13	임	701.0	70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23	상양혈리	154 - 14	임	19,425.0	19,42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24	상양혈리	154 - 33	임	1,386.5	1,386.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1
425	상양혈리	154 - 34	임	95.0	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2
426	상양혈리	154 - 17	임	147.0	14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27	상양혈리	154 - 19	임	206.0	2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28	상양혈리	154 - 20	임	1,840.0	1,84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29	상양혈리	154 - 21	임	389.0	38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30	상양혈리	154 - 22	임	21,637.0	21,63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31	상양혈리	154 - 24	임	679.0	6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32	상양혈리	154 - 25	임	2,334.0	2,33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33	상양혈리	154 - 26	임	969.0	96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434	상양혈리	154 - 30	임	11,063.0	11,06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35	상양혈리	154 - 31	임	2,921.0	2,92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36	상양혈리	155	체	1,558.0	1,55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37	상양혈리	155 - 3	체	1,007.0	1,00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38	상양혈리	156	체	697.0	69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39	상양혈리	156 - 1	구	248.0	248.0	국(농림수산식품부)	0
440	상양혈리	156 - 7	구	2,799.0	2,79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41	상양혈리	158	체	595.0	5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42	상양혈리	159	체	18,905.0	18,9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43	상양혈리	159 - 6	체	130.0	13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44	상양혈리	159 - 7	체	474.8	474.8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45	상양혈리	160	답	1,137.0	1,13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46	상양혈리	160 - 1	전	453.0	4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47	상양혈리	160 - 2	구	364.0	36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48	상양혈리	161	전	367.0	36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49	상양혈리	162	답	856.0	85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0	상양혈리	163	답	674.0	67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1	상양혈리	163 - 1	전	1,240.0	1,24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2	상양혈리	164	답	4,998.0	4,99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3	상양혈리	164 - 1	답	1,488.0	1,48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4	상양혈리	165	체	929.0	92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5	상양혈리	166 - 1	답	1,934.0	1,93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6	상양혈리	166 - 2	도	1,263.0	1,26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7	상양혈리	167 - 2	도	1,851.0	1,85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8	상양혈리	167 - 3	전	3.0	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9	상양혈리	168 - 1	답	1,068.0	1,06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60	상양혈리	산4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61	상양혈리	산4 - 1	구	91.0	9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62	상양혈리	산4 - 2	임	6,689.0	6,68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463	상양혈리	산4 - 3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64	상양혈리	산4 - 4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65	상양혈리	산4 - 5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66	상양혈리	산4 - 6	임	2,072.0	2,07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67	상양혈리	산4 - 7	임	1,818.0	1,81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68	상양혈리	산4 - 8	임	2,149.0	2,14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69	상양혈리	산4 - 9	임	2,115.0	2,11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0	상양혈리	산4 - 10	임	1,917.0	1,91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1	상양혈리	산4 - 11	임	1,917.0	1,91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2	상양혈리	산7 - 1	임	10,314.0	10,31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3	상양혈리	산7 - 2	도	2,479.0	2,4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4	상양혈리	산7 - 3	임	2,697.0	2,69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5	상양혈리	산9 - 2	도	992.0	99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6	상양혈리	산13 - 2	도	239.0	23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7	상양혈리	산13 - 3	임	620.0	62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8	상양혈리	산13 - 5	도	384.0	38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9	상양혈리	산13 - 6	도	4,770.0	4,77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80	상양혈리	산13 - 8	임	128.0	12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81	와리	1	전	367.0	36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82	와리	1 - 1	도	73.0	7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83	와리	2 - 1	답	469.0	469.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484	와리	2 - 2	답	2,691.0	2,69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85	와리	2 - 3	도	2,720.0	2,72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86	와리	3	잡	1,481.0	1,481.0	양양산업주식회사	양양군손양면와리 10-1
487	와리	4	임	205.0	2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88	와리	21	전	1,640.0	1,64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89	와리	21 - 1	전	526.3	526.3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90	와리	22 - 1	잡	65.0	6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91	와리	22 - 6	잡	592.9	592.9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492	와리	22 - 5	전	1,463.4	1,463.4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93	와리	222 - 4	도	745.0	74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94	와리	223 - 8	구	581.0	5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95	와리	산5 - 1	임	5,939.0	5,93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96	와리	산5 - 2	도	1,983.0	1,98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97	와리	산6 - 1	임	2,718.0	2,71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98	와리	산6 - 2	도	2,182.0	2,18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99	와리	산6 - 3	임	60.0	6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0	와리	산7	임	7,537.0	7,53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1	와리	산8	임	10,735.0	10,73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2	와리	산8 - 1	도	241.0	24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3	와리	산9 - 1	임	6,347.0	6,34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4	와리	산9 - 2	도	4,562.0	4,56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5	와리	산9 - 3	임	793.0	79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6	와리	산10	임	19,934.0	19,93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7	와리	산11	임	5,950.0	5,95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8	와리	산13 - 1	임	2,812.0	2,81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9	와리	산13 - 9	임	98.8	98.8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10	와리	0 - 2	가		0.0		
511	하왕도리	1	전	2,344.0	2,34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12	하왕도리	3	답	8,794.0	8,79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13	하왕도리	5	답	159.0	15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14	하왕도리	6 - 1	답	1,220.0	1,22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15	하왕도리	7 - 1	전	304.0	30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16	하왕도리	7 - 2	도	56.0	5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17	하왕도리	8 - 1	답	79.0	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18	하왕도리	8 - 2	도	225.0	22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19	하왕도리	13 - 2	도	258.0	25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20	하왕도리	13 - 3	도	1,088.0	1,088.0	국(기획재정부)	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521	하왕도리	15	도	2,318.0	2,318.0	국(기획재정부)	0
522	하왕도리	16 - 1	답	717.0	71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23	하왕도리	16 - 2	도	1,521.0	1,521.0	국(기획재정부)	0
524	하왕도리	17 - 1	답	3,418.0	3,41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25	하왕도리	17 - 2	답	1,769.0	1,76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26	하왕도리	17 - 3	도	56.0	5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27	하왕도리	18	답	3,021.0	3,02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28	하왕도리	19	답	3,537.0	3,53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29	하왕도리	20	답	3,021.0	3,02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30	하왕도리	23	답	3,617.0	3,61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31	하왕도리	23 - 2	도	521.0	52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32	하왕도리	24	전	317.0	31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33	하왕도리	25	답	1,977.0	1,97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34	하왕도리	26	답	2,261.0	2,261.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535	하왕도리	27	답	145.0	14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36	하왕도리	28	전	340.0	34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37	하왕도리	29	답	565.0	56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38	하왕도리	33	답	512.0	51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39	하왕도리	197	도	922.0	92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40	하왕도리	198 - 2	도	301.0	30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41	하왕도리	203 - 1	답	5,263.0	5,26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42	하왕도리	203 - 2	도	231.0	231.0	국(국토교통부)	0
543	하왕도리	203 - 3	도	4,261.0	4,261.0	국(기획재정부)	0
544	하왕도리	204 - 1	답	1,183.0	1,18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45	하왕도리	205 - 3	도	1,552.0	1,55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46	하왕도리	205 - 7	도	223.0	223.0	국(국토교통부)	0
547	하왕도리	205 - 5	도	337.0	33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48	하왕도리	206 - 2	도	1,494.0	1,49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49	하왕도리	206 - 3	도	16.0	16.0	국(국토교통부)	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550	하왕도리	383 - 27	구	2,843.0	2,84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51	하왕도리	383 - 28	구	171.0	171.0	국(농림수산식품부)	0
552	하왕도리	383 - 19	구	1,688.0	1,68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53	하왕도리	383 - 29	구	1,236.0	1,23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54	하왕도리	383 - 25	구	441.0	44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55	하왕도리	383 - 26	구	837.0	83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56	하왕도리	384	도	1,091.0	1,09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57	하왕도리	387 - 9	도	156.0	156.0	국(국토교통부)	0
558	하왕도리	산14 - 4	도	4,066.0	4,06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59	하왕도리	산19	임	16,914.0	16,91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0	하왕도리	산20	임	21,647.0	21,64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1	하왕도리	산25	임	3,174.0	3,17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2	하왕도리	산26	임	14,082.0	14,08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3	하왕도리	산30 - 1	임	3,669.0	3,66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4	하왕도리	산30 - 2	도	6,050.0	6,05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5	하왕도리	산31	임	43,032.0	43,03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6	하왕도리	산33	임	1,983.0	1,98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7	하왕도리	산33 - 1	임	826.0	82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8	하왕도리	산33 - 2	임	992.0	99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9	하왕도리	산33 - 3	임	992.0	99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70	하왕도리	산33 - 4	임	1,157.0	1,15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71	하왕도리	산34 - 1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72	하왕도리	산34 - 2	도	3,570.0	3,57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73	하왕도리	산34 - 3	도	5,851.0	5,85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74	하왕도리	산34 - 4	임	694.0	69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75	하왕도리	산34 - 5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76	하왕도리	산34 - 6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77	하왕도리	산34 - 7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78	하왕도리	산34 - 8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579	하왕도리	산34 - 9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80	하왕도리	산34 - 10	임	3,306.0	3,3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손중로 179-22
581	하왕도리	산34 - 11	임	3,306.0	3,3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82	하왕도리	산34 - 12	임	3,306.0	3,3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83	하왕도리	산34 - 13	임	3,306.0	3,3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84	하왕도리	산34 - 14	임	3,306.0	3,3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85	하왕도리	산34 - 15	임	3,306.0	3,3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86	하왕도리	산34 - 16	임	3,306.0	3,3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87	하왕도리	산34 - 17	임	3,306.0	3,3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88	하왕도리	산34 - 18	임	3,306.0	3,3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89	하왕도리	산34 - 19	임	2,576.0	2,57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0	하왕도리	산36 - 2	도	8,331.0	8,33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1	학포리	201 - 5	구	2,120.0	2,12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2	학포리	201 - 6	구	1,734.0	1,73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3	학포리	201 - 13	구	105.0	1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4	학포리	305	답	24,507.0	24,50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5	학포리	307	답	988.0	98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6	학포리	307 - 1	전	955.0	95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7	학포리	310	답	5,005.0	5,0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8	학포리	317	답	476.0	47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9	학포리	318 - 1	답	72.0	7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00	학포리	산84 - 1	임	41,830.0	41,83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01	학포리	산84 - 4	임	6,383.0	6,38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02	학포리	산84 - 5	임	1,054.0	1,05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03	학포리	산84 - 6	임	3,449.0	3,44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04	학포리	산84 - 7	임	7,292.0	7,29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05	학포리	산84 - 8	임	1,082.0	1,08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06	학포리	산86	임	8,203.0	8,20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07	학포리	산149 - 1	임	45,736.0	45,73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730,114.2	—	2,730,587.8	100.0	
관 리 지 역	2,730,114.2	증) 473.6	2,730,587.8	100.0	
보전관리지역	139,147.0	—	139,147.0	5.1	
계획관리지역	2,590,967.2	증) 473.6	2,591,440.8	94.9	

*구역계 변경없음(금회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m ²)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 일원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증) 473.6	200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 영에 따른 면적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㉔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 일원	2,730,114.2	
변경	㉔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 일원	2,730,587.8	

*구역계 변경없음(금회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m ²)			변경사유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㉔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 일원	2,730,114.2	증) 473.6	2,730,587.8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3.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조서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기정	변경	2,730,114.2	증) 473.6	2,730,587.8	
공공편익 시설지구	동호리 502-4 일원	동호리 502-4 일원	68,068.0	감) 0.6	68,067.4	
숙박 시설지구	밀양리 4-2 일원	밀양리 4-2 일원	245,851.2	증) 193.0	246,044.2	
상가 시설지구	동호리 510-153 일원	동호리 510-153 일원	40,136.0	-	40,136.0	
관광휴양오락시설 지구	동호리 510-20 일원	동호리 510-20 일원	1,018,858.0	감) 33.7	1,018,824.3	
기 타 시설지구	밀양리 산80-1 일원	밀양리 산80-1 일원	1,357,201.0	증) 314.9	1,357,515.9	
	원형녹지	밀양리 산79-3 일원	720,589.0	-	720,589.0	
	기타녹지	밀양리 산54-1 일원	602,064.0	증) 335.0	602,399.0	
	직원숙소C	와리 산9-2 일원	6,185.0	-	6,185.0	
	관광단지 지원시설	동호리 504 일원	28,363.0	감) 20.1	28,342.9	

2)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가 구 명	면 적 (㎡)			변경사유	비고
	기정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2,689,978.2	증) 473.6	2,690,451.8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공공편익 시설지구	68,068.0	감) 0.6	68,067.4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숙박 시설지구	245,851.2	증) 193.0	246,044.2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관광휴양오락시설 지구	1,018,858.0	감) 33.7	1,018,824.3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기 타 시설지구	1,357,201.0	증) 314.9	1,357,515.9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원형녹지	720,589.0	-	720,589.0		
	기타녹지	602,064.0	증) 335.0	602,399.0		
	직원숙소C	6,185.0	-	6,185.0		
	관광단지 지원시설	28,363.0	감) 20.1	28,342.9		

3)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기정 면적 (㎡)	획지			증감 (㎡)	비 고
					위치		변경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공공편익 시설지구	1	공공편익 시설지구	68,068.0			68,067.4	감) 0.6	변 경
1-1	주차장 (메인주차장)	1-1	주차장 (메인주차장)	16,939.0	동호리 506-1 일대	동호리 506-1 일대	16,939.0		
1-2	저고도돌풍 경고장치	1-2	저고도돌풍 경고장치	300.0	상양혈리 154-7 일대	상양혈리 154-7 일대	300.0		
1-3-A	도로A	1-3-A	도로A	12,016.0	동호리 502-4 일대	동호리 502-4 일대	12,016.0		
1-3-B	도로B	1-3-B	도로B	10,143.0	동호리 510-6 일대	동호리 647 일대	10,142.4	감) 0.6	변 경
1-3-C	도로C	1-3-C	도로C	25,655.0	동호리 산300-4 일대	동호리 산300-4 일대	11,802.0	감) 13,853.0	변 경
1-3-D	도로D	1-3-D	도로D	612.0	상양혈리 154-11 일대	상양혈리 154-11 일대	612.0		
		1-3-E	도로E			동호리 643 일대	13,853.0	증) 13,853.0	신 설
1-4	창고	1-4	창고	2,403.0	와리 산6-1일대	와리 산6-1일대	2,403.0		
2	숙박시설지구	2	숙박시설지구	245,851.2			246,044.2	증) 193.0	변 경
2-1-A	관광호텔A	2-1-A	관광호텔A	25,976.0	밀양리 산75 일대	밀양리 산75 일대	25,976.0		
2-1-B	관광호텔B	2-1-B	관광호텔B	36,304.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36,304.0		
2-2-A	설해온천 /골프텔	2-2-A	설해온천 /골프텔	20,730.0	밀양리 4 일대	밀양리 316 일대	20,785.2	증) 55.2	변 경
2-2-C	마운틴스테이	2-2-C	마운틴스테이	19,670.2	동호리 564 일대	동호리 564 일대	19,670.2		
2-2-D	설해수림	2-2-D	설해수림	45,257.0	밀양리 산50-1 일대	밀양리 산50-1 일대	45,257.0		
2-2-E	휴양콘도 미니엄E	2-2-E	휴양콘도 미니엄E	17,153.0	밀양리 산48 일대	밀양리 산48 일대	17,153.0		
2-3-A 7	설해별담A1	2-3-A 1	설해별담A1	1,037.0	동호리 582 일대	동호리 582 일대	1,037.0		
2-3-A 6	설해별담A2	2-3-A 2	설해별담A2	1,998.0	동호리 580 일대	동호리 580 일대	2,132.8	증) 134.8	변 경
2-3-A 9	설해별담B1	2-3-B 1	설해별담B1	3,644.0	동호리 573 일대	동호리 573 일대	3,644.0		
2-3-A 8	설해별담B2	2-3-B 2	설해별담B2	589.0	동호리 565 일대	동호리 565 일대	589.0		

도면번호				기정 면적 (㎡)	확지			증감 (㎡)	비 고
					위치		변경면적 (㎡)		
					기정	변경			
2-3-A 10	설해별담B3	2-3-B 3	설해별담B3	2,411.0	동호리 586 일대	동호리 586 일대	2,411.0		
2-3-A 3	설해별담C1	2-3-C 1	설해별담C1	3,958.0	동호리 598 일대	동호리 598 일대	3,958.0		
2-3-A 1	설해별담C2	2-3-C 2	설해별담C2	4,083.0	동호리 602 일대	동호리 602 일대	4,083.0		
2-3-A 4	설해별담D1	2-3-D 1	설해별담D1	4,628.0	동호리 611 일대	동호리 611 일대	4,628.0		
2-3-A 2	설해별담D2	2-3-D 2	설해별담D2	2,164.0	동호리 626 일대	동호리 626 일대	2,164.0		
2-3-A 5	설해별담E	2-3-E	설해별담E	2,698.0	동호리 627 일대	동호리 627 일대	2,698.0		
2-3-C	더 하우스	2-3-F	더 하우스	1,980.0	상양혈리 154-14 일대	상양혈리 391 일대	1,983.0	증) 3.0	변 경
2-3-D	숙박D	2-3-G	숙박D	37,678.0	동호리 510-54 일대	동호리 510-54 일대	37,678.0		
2-3-E	숙박E	2-3-H	숙박E	13,893.0	동호리 산296 일대	동호리 산296 일대	13,893.0		
3	상가시설지구	3	상가시설지구	40,136.0			40,136.0		
3-1	아울렛몰	3-1	아울렛몰	34,209.0	동호리 510-153 일대	동호리 510-153 일대	34,209.0		
3-2	지역특산물상 가	3-2	지역특산물상 가	3,330.0	동호리 산296 일대	동호리 산296 일대	3,330.0		
3-3	근린생활시설	3-3	근린생활시설	2,597.0	동호리 503 일대	동호리 503 일대	2,597.0		
4	관광휴양 오락시설지구	4	관광휴양 오락시설지구	1,018,858.0			1,018,824.3	감) 33.7	변 경
4-1	27홀 골프장	4-1	27홀 골프장	588,109.0	동호리 510-28 일대	동호리 510-28 일대	588,090.9	감) 18.1	변 경
4-1 -1	P1 Hole	4-1 -1	P1 Hole	27,863.0	동호리 510-8 일대	동호리 510-8 일대	27,863.0		
4-1 -2	P2 Hole	4-1 -2	P2 Hole	16,884.0	동호리 510-15 일대	동호리 510-15 일대	16,884.0		
4-1 -3	P3 Hole	4-1 -3	P3 Hole	26,139.0	동호리 510-16 일대	동호리 510-16 일대	26,139.0		
4-1 -4	P4 Hole	4-1 -4	P4 Hole	6,780.0	동호리 510-17 일대	동호리 510-17 일대	6,780.0		
4-1 -5	P5 Hole	4-1 -5	P5 Hole	13,554.0	동호리 510-17 일대	동호리 510-17 일대	13,554.0		

도면번호					기정 면적 (㎡)	획지			증감 (㎡)	비 고
						위치		변경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1 -6	P6 Hole	4-1 -6	P6 Hole	17,268.0	동호리 510-16 일대	동호리 510-16 일대	17,268.0			
4-1 -7	P7 Hole	4-1 -7	P7 Hole	6,123.0	상양혈리 154-6 일대	상양혈리 154-6 일대	6,123.0			
4-1 -8	P8 Hole	4-1 -8	P8 Hole	18,463.0	상양혈리 154-4 일대	상양혈리 154-4 일대	18,463.0			
4-1 -9	P9 Hole	4-1 -9	P9 Hole	14,624.0	상양혈리 159 일대	상양혈리 159 일대	14,624.0			
4-1 -10	S1 Hole	4-1 -10	S1 Hole	19,663.0	동호리 510-8 일대	동호리 510-8 일대	19,663.0			
4-1 -11	S2 Hole	4-1 -11	S2 Hole	13,565.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13,565.0			
4-1 -12	S3 Hole	4-1 -12	S3 Hole	4,496.0	동호리 448 일대	동호리 448 일대	4,496.0			
4-1 -13	S4 Hole	4-1 -13	S4 Hole	25,907.0	동호리 448 일대	동호리 448 일대	25,907.0			
4-1 -14	S5 Hole	4-1 -14	S5 Hole	17,765.0	동호리 510-96 일대	동호리 510-96 일대	17,765.0			
4-1 -15	S6 Hole	4-1 -15	S6 Hole	8,164.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8,164.0			
4-1 -16	S7 Hole	4-1 -16	S7 Hole	16,048.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16,048.0			
4-1 -17	S8 Hole	4-1 -17	S8 Hole	24,866.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24,866.0			
4-1 -18	S9 Hole	4-1 -18	S9 Hole	21,238.0	동호리 510-28 일대	동호리 510-28 일대	21,238.0			
4-1 -19	V1 Hole	4-1 -19	V1 Hole	17,223.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17,223.0			
4-1 -20	V2 Hole	4-1 -20	V2 Hole	19,597.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19,597.0			
4-1 -21	V3 Hole	4-1 -21	V3 Hole	8,741.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8,741.0			
4-1 -22	V4 Hole	4-1 -22	V4 Hole	17,343.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17,343.0			
4-1 -23	V5 Hole	4-1 -23	V5 Hole	24,105.0	동호리 510-18 일대	동호리 510-18 일대	24,105.0			

도면번호					기정 면적 (㎡)	획지			증감 (㎡)	비 고
						위치		변경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1 -24	V6 Hole	4-1 -24	V6 Hole	8,423.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8,423.0			
4-1 -25	V7 Hole	4-1 -25	V7 Hole	15,727.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15,727.0			
4-1 -26	V8 Hole	4-1 -26	V8 Hole	7,595.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7,595.0			
4-1 -27	V9 Hole	4-1 -27	V9 Hole	23,963.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23,963.0			
4-1 -28	카트로(27홀)	4-1 -28	카트로(27홀)	40,158.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40,158.0			
4-1 -29	연못(Fond)	4-1 -29	연못(Fond)	83,569.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83,569.0			
4-1 -30	클럽하우스 및 지원시설	4-1 -30	클럽하우스 및 지원시설	21,647.0	동호리 510-28 일대	동호리 645 일대	21,628.9	감)	18.1	
4-1 -31	휴게소 (티하우스)	4-1 -31	휴게소 (티하우스)	608.0	동호리 510-18 일대	동호리 510-18 일대	608.0			
4-2	18홀 골프장	4-2	18홀 골프장	381,383.0	학포리 305 일대	학포리 305 일대	381,383.0			
4-2 -1	설1 Hole	4-2 -1	설1 Hole	20,888.0	밀양리 산67-1 일대	밀양리 산67-1 일대	20,888.0			
4-2 -2	설2 Hole	4-2 -2	설2 Hole	14,144.0	학포리 산84-1 일대	학포리 산84-1 일대	14,144.0			
4-2 -3	설3 Hole	4-2 -3	설3 Hole	14,668.0	학포리 305 일대	학포리 305 일대	14,668.0			
4-2 -4	설4 Hole	4-2 -4	설4 Hole	3,733.0	학포리 산149-1 일대	학포리 산149-1 일대	3,733.0			
4-2 -5	설5 Hole	4-2 -5	설5 Hole	19,008.0	학포리 산149-1 일대	학포리 산149-1 일대	19,008.0			
4-2 -6	설6 Hole	4-2 -6	설6 Hole	21,974.0	하왕도리 3 일대	하왕도리 3 일대	21,974.0			
4-2 -7	설7 Hole	4-2 -7	설7 Hole	4,683.0	하왕도리 산20 일대	하왕도리 산20 일대	4,683.0			
4-2 -8	설8 Hole	4-2 -8	설8 Hole	11,511.0	하왕도리 산31 일대	하왕도리 산31 일대	11,511.0			
4-2 -9	설9 Hole	4-2 -9	설9 Hole	18,536.0	밀양리 산70-1 일대	밀양리 산70-1 일대	18,536.0			

도면번호					기정 면적 (㎡)	획지				증감 (㎡)	비 고
						위치		변경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4-2-10	해1 Hole	4-2-10	해1 Hole	17,290.0	상양혈리 154-22 일대	상양혈리 154-22 일대	17,290.0				
4-2-11	해2 Hole	4-2-11	해2 Hole	5,984.0	밀양리 17-1 일대	밀양리 17-1 일대	5,984.0				
4-2-12	해3 Hole	4-2-12	해3 Hole	13,095.0	밀양리 산79 일대	밀양리 산79 일대	13,095.0				
4-2-13	해4 Hole	4-2-13	해4 Hole	13,604.0	밀양리 4-8 일대	밀양리 4-8 일대	13,604.0				
4-2-14	해5 Hole	4-2-14	해5 Hole	29,920.0	밀양리 산73-1 일대	밀양리 산73-1 일대	29,920.0				
4-2-15	해6 Hole	4-2-15	해6 Hole	19,559.0	밀양리 106-5 일대	밀양리 106-5 일대	19,559.0				
4-2-16	해7 Hole	4-2-16	해7 Hole	4,974.0	밀양리 133-1 일대	밀양리 133-1 일대	4,974.0				
4-2-17	해8 Hole	4-2-17	해8 Hole	23,075.0	밀양리 산55-1 일대	밀양리 산55-1 일대	23,075.0				
4-2-18	해9 Hole	4-2-18	해9 Hole	30,340.0	밀양리 산70-1 일대	밀양리 산70-1 일대	30,340.0				
4-2-19	카트로(18홀)	4-2-19	카트로(18홀)	33,443.0	밀양리 산70-1 일대	밀양리 산70-1 일대	33,443.0				
4-2-20	연못(POND)	4-2-20	연못(POND)	54,607.0	학포리 산84-1 일대	학포리 산84-1 일대	54,607.0				
4-2-21	휴게소 (티하우스)	4-2-21	휴게소 (티하우스)	1,015.0	밀양리 산75-1 일대	밀양리 산75-1 일대	1,015.0				
4-2-22	묘포장	4-2-22	묘포장	5,332.0	학포리 산149-1 일대	학포리 산149-1 일대	5,332.0				
4-3	체육관	4-3	체육관	6,662.0	동호리 산296 일대	동호리 산296 일대	6,662.0				
4-4	박물관	4-4	박물관	2,055.0	와리 산9-2 일대	와리 산9-2 일대	2,055.0				
4-5	힐링가든	4-5	힐링가든	21,064.0	하왕도리 203-1 일대	하왕도리 203-1 일대	21,064.0				
4-6	미술관	4-6	미술관	16,888.0	동호리 510-1 일대	동호리 510-1 일대	16,888.0				
4-7	예지물창고	4-7	예지물창고	2,697.0	와리 22-5 일대	와리 229 일대	2,681.4	감)	15.6		
6	기타시설지구	6	기타시설지구	1,357,201.0			1,357,515.9	증)	314.9		

도면번호				기정 면적 (㎡)	획지			증감 (㎡)	비 고
					위치		변경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1	27홀 원형녹지	6-1	27홀 원형녹지	314,492.0	동호리 510-85 일대	동호리 510-85 일대	314,492.0		
6-2	18홀 원형녹지	6-2	18홀 원형녹지	173,313.0	밀양리 산80-1 일대	밀양리 산80-1 일대	173,313.0		
6-3	관광 원형녹지	6-3	관광 원형녹지	232,784.0	하왕도리 산30-1 일대	하왕도리 산30-1 일대	232,784.0		
6-4	27홀 기타녹지	6-4	27홀 기타녹지	231,763.0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231,763.0		
6-5	18홀 기타녹지	6-5	18홀 기타녹지	313,822.0	밀양리 산70-1 일대	밀양리 산70-1 일대	313,822.0		
6-6	관광단지 기타녹지	6-6	관광단지 기타녹지	56,479.0	동호리 641 일대	동호리 641 일대	56,814.0	증) 335.0	변 경
6-7	직원숙소C	6-7	직원숙소C	6,185.0	와리 산9-2 일대	와리 산9-2 일대	6,185.0		
6-8	관광단지 지원시설	6-8	관광단지 지원시설	28,363.0	동호리 504 일대	동호리 644 일대	28,342.9	감) 20.1	변 경

주 : 『기정』 은 양양군 고시 제2024-172호 기준 (2024. 12. 20)

4)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유서

가) 공공편익시설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		면적(m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공공편익시설지구 합계					35,798.0	35,797.4	감) 0.6	
변경	1-3-B	도로B	동호리 510-6 일대	동호리 510-6 일대	10,143.0	10,142.4	감) 0.6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 적변경
변경	1-3-C	도로C	동호리 산300-4 일대	동호리 산300-4 일대	25,655.0	11,802.0	감) 13,853.0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 적변경
신설	1-3-E	도로E		동호리 643 일대		13,853.0	증) 13,853.0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도로 획지 구분

나) 숙박시설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숙박시설지구 합계					101,491.0	101,684.0	증) 193.0	
변경	2-2-A	설해온천/ 골프텔	밀양리 4 일대	밀양리 316 일대	20,730.0	20,785.2	증) 55.2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 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현황에 맞춘 획지번호 변경
변경	2-3-A 1	설해별담A1	동호리 582 일대	동호리 582 일대	1,037.0	1,037.0		○현황에 맞춘 획지번호 변경
변경	2-3-A 2	설해별담A2	동호리 580 일대	동호리 580 일대	1,998.0	2,132.8	증) 134.8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 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현황에 맞춘 획지번호 변경
변경	2-3-B 1	설해별담B1	동호리 573 일대	동호리 573 일대	3,644.0	3,644.0		○현황에 맞춘 획지번호 변경
변경	2-3-B 2	설해별담B2	동호리 565 일대	동호리 565 일대	589.0	589.0		○현황에 맞춘 획지번호 변경
변경	2-3-B 3	설해별담B3	동호리 586 일대	동호리 586 일대	2,411.0	2,411.0		○현황에 맞춘 획지번호 변경
변경	2-3-C 1	설해별담C1	동호리 598 일대	동호리 598 일대	3,958.0	3,958.0		○현황에 맞춘 획지번호 변경
변경	2-3-C 2	설해별담C2	동호리 602 일대	동호리 602 일대	4,083.0	4,083.0		○현황에 맞춘 획지번호 변경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		면적(m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변경	2-3-D 1	설해별담D1	동호리 611 일대	동호리 611 일대	4,628.0	4,628.0		○ 현황에 맞춘 획지번호 변경
변경	2-3-D 2	설해별담D2	동호리 626 일대	동호리 626 일대	2,164.0	2,164.0		○ 현황에 맞춘 획지번호 변경
변경	2-3-E	설해별담E	동호리 627 일대	동호리 627 일대	2,698.0	2,698.0		○ 현황에 맞춘 획지번호 변경
변경	2-3-F	더 하우스	상양혈리 154-14 일대	상양혈리 391 일대	1,980.0	1,983.0	증) 3.0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획지번호 변경
변경	2-3-G	숙박D	동호리 510-54 일대	동호리 510-54 일대	37,678.0	37,678.0		○ 획지번호 변경
변경	2-3-H	숙박E	동호리 산296 일대	동호리 산296 일대	13,893.0	13,893.0		○ 획지번호 변경

다)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합계					590,806.0	590,772.3	감)	33.7	
변 경	4-1	27홀 골프장	동호리 510-28 일대	동호리 645 일대	588,109.0	588,090.9	감)	18.1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4-1-30	클럽하우스 및 지원시설	동호리 510-28 일대	동호리 645 일대	21,647.0	21,628.9	감)	18.1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변 경	4-7	예지물창고	와리 22-5 일대	와리 229 일대	2,697.0	2,681.4	감)	15.6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라) 기타시설지구 결정(변경)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타시설지구 합계					84,842.0	85,156.9	증) 314.9	
변	6-6	관광단지	동호리	동호리	56,479.0	56,814.0	증) 335.0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경		기타녹지	641 일대	641 일대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 적변경
변 경	6-8	관광단지 지원시설	동호리 504 일대	동호리 644 일대	28,363.0	28,342.9	감) 20.1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 적변경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주차장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1-1	동호리 506-1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주차장 (기사대기실, 주차타워)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4,411㎡/16,939 ㎡
			용적율	200% 이하	4,411㎡/16,939 ㎡ 8,890㎡(지하층 포함)
			높이	지상1층/지하1층	
			배치	도면참조	2동
			형태	평면형/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주황 ▣ 보조색: 밝은 회 노랑, 밝은 회 파랑	
변경	1-1	동호리 506-1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주차장 (기사대기실, 주차타워)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지상1층/지하1층	
			배치	도면참조	2동
			형태	평면형/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주황 ▣ 보조색: 밝은 회 노랑, 밝은 회 파랑	

■ 창고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1-4	와리 산6-1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	창고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920㎡/2,403㎡
			용적율	100% 이하	920㎡/2,403㎡
			높이	지상2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경사형 지붕	
변경	1-4	와리 산6-1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	창고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용적율	100% 이하	
			높이	지상2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회색 ▣ 보조색: 목탄색, 어두운 회색	

■ 관광호텔A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1-A	밀양리 산75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A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7,590㎡/25,976㎡
			용적율		200% 이하	18,100㎡/25,976㎡ 25,200㎡(지하층 포함)
			높이		지상6층/지하1층	
			배치		도면참조	2동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파랑 띠 회색, 노란 하양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진한갈색	
변경	2-1-A	밀양리 산75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A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지상6층/지하1층	
			배치		도면참조	2동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파랑 띠 회색, 노란 하양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진한갈색	

■ 관광호텔B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1-B	동호리 510-20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B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3,552㎡/36,304 ㎡
			용적율		200% 이하	4,824㎡/36,304 ㎡
			높이		최고 : 4층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1-B	동호리 510-20 일대	배치	도면참조	4동
			형태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파랑 띠 회색, 노란 하양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진한갈색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B
			허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최고 : 4층	
			배치	도면참조	4동
			형태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파랑 띠 회색, 노란 하양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진한갈색	

■ 설해온천/골프텔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2-A	밀양리 4 일대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설해온천/ 골프텔
			허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9,651㎡/20,730 ㎡
			용적율	200% 이하	20,937㎡/20,730 ㎡ 31,952㎡(지하층 포함)
			높이	지상6층/지하3층	
			배치	도면참조	2동
			형태	경사형/평면형 지붕	
변경	2-2-A	밀양리 4 일대	색채	□ 주조색: 밝은 회 노랑, 하양 □ 보조색: 주황, 밝은갈색, 밝은 회 파랑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설해온천/ 골프텔
			허용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지상6층/지하3층	
			배치	도면참조	2동
			형태	경사형/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회 노랑, 하양 □ 보조색: 주황, 밝은갈색, 밝은 회 파랑	

■ 마운틴스테이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2-C	동호리 564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 설	마운틴스테이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4,285㎡/19,670. 2㎡
			용적율	200% 이하	7,022㎡/19,670. 2㎡ 10,165㎡(지하층 포함)
			높이	최고 : 5층	
			배치	도면참조	10동
			형태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노랑 하양, 회검정 ▣ 보조색: 진한갈색	
변경	2-2-C	동호리 564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 설	마운틴스테이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최고 : 5층	
			배치	도면참조	10동
			형태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노랑 하양, 회검정 ▣ 보조색: 진한갈색	

■ 설해수립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2-D	밀양리 산50-1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 설	휴양콘도미니엄D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11,436㎡/45,257 ㎡
			용적율	200% 이하	31,173㎡/45,257 ㎡ 47,958㎡(지하층 포함)
			높이	지상6층/지하3층	
			배치	도면참조	14동
			형태	경사형/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목탄색 ▣ 보조색: 하양, 흐린 황갈색, 밝은 회 파랑	
변경	2-2-D	밀양리 산50-1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설해수립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지상6층/지하3층	
			배치	도면참조	14동
			형태	경사형/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목단색 ▣ 보조색: 하양, 흐린 황갈색, 밝은 회 파랑	

■ 휴양 콘도미니엄E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2-E	밀양리 산48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E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3,224㎡/17,153 ㎡	
			용적율	200% 이하	2,795㎡/17,153 ㎡	
			높이	지상2층		
			배치	도면참조	13동	
			형태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기정	2-2-E	밀양리 산48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E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지상2층		
			배치	도면참조	13동	
			형태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 실효별담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3-A1 (가구번호)	동호리 602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실효별담C2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9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구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A1-1, -2, -3, -4, -5, -6, -7, -8, -9								
			획지번호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객실수 (실)	
			2-3-A1-1	364.0	211.12	422.24	422.24	58.00	116.00	2	1	
			2-3-A1-2	451.0	261.58	523.16	523.16	58.00	116.00	2	1	
			2-3-A1-3	354.0	178.03	277.82	247.59	50.29	69.94	2/B1	1	
			2-3-A1-4	412.0	238.96	477.92	477.92	58.00	116.00	2	1	
			2-3-A1-5	521.0	302.18	604.36	604.36	58.00	116.00	2	1	
			2-3-A1-6	354.0	205.32	410.64	410.64	58.00	116.00	2	1	
			2-3-A1-7	560.0	324.80	649.60	649.60	58.00	116.00	2	1	
			2-3-A1-8	528.0	306.24	612.48	612.48	58.00	116.00	2	1	
			2-3-A1-9	539.0	312.62	625.24	625.24	58.00	116.00	2	1	
변경	2-3-C2 (가구번호)	동호리 602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C2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9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구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C2-1, -2, -3, -4, -5, -6, -7, -8, -9								
기정	2-3-A2 (가구번호)	동호리 626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D2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배치	도면참조							6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A2-1, -2, -3, -4, -5, -6							
			획지번호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객실수 (실)
			2-3-A2-1	405.0	234.90	469.80	469.80	58.00	116.00	2	1
			2-3-A2-2	345.0	200.10	400.20	400.20	58.00	116.00	2	1
			2-3-A2-3	339.0	194.83	333.87	303.62	57.47	89.56	2/B1	1
			2-3-A2-4	335.0	194.83	333.87	303.62	58.16	90.63	2/B1	1
			2-3-A2-5	336.0	194.88	389.76	389.76	58.00	116.00	2	1
			2-3-A2-6	404.0	234.32	468.64	468.64	58.00	116.00	2	1
변경	2-3-D2 (가구번호)	동호리 626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D2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6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D2-1, -2, -3, -4, -5, -6							
기정	2-3-A3 (가구번호)	동호리 598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C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10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해당획지 (획지번호)	2-3-A3-1, -2, -3, -4, -5, -6, -7, -8, -9, -10								
			획지번호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객실수 (실)	
			2-3-A3-1	397.0	230.26	460.52	460.52	58.00	116.00	2	1	
			2-3-A3-2	484.0	280.72	561.44	561.44	58.00	116.00	2	1	
			2-3-A3-3	357.0	207.06	414.12	414.12	58.00	116.00	2	1	
			2-3-A3-4	377.0	218.66	437.32	437.32	58.00	116.00	2	1	
			2-3-A3-5	385.0	188.32	326.92	300.79	48.91	78.13	2/B1	1	
			2-3-A3-6	372.0	215.76	431.52	431.52	58.00	116.00	2	1	
			2-3-A3-7	364.0	211.12	422.24	422.24	58.00	116.00	2	1	
			2-3-A3-8	349.0	202.42	404.84	404.84	58.00	116.00	2	1	
			2-3-A3-9	455.0	234.84	461.73	461.73	51.61	101.48	2	1	
			2-3-A3-10	418.0	242.44	484.88	484.88	58.00	116.00	2	1	
변경	2-3-C1 (가구번호)	동호리 598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C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10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구조색: 어두운 회색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3-A4 (가구번호)	동호리 611 일대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C1-1, -2, -3, -4, -5, -6, -7, -8, -9, -10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D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2층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11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A4-1, -2, -3, -4, -6, -7, -8, -9, -10, -11, -12								
			획지번호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객실수 (실)	
			2-3-A4-1	367.0	212.86	425.72	425.72	58.00	116.00	2	1	
			2-3-A4-2	424.0	245.92	491.84	491.84	58.00	116.00	2	1	
			2-3-A4-3	345.0	178.03	277.82	247.59	51.60	71.77	2/B1	1	
			2-3-A4-4	698.0	400.00	1200	800.00	57.31	114.61	2/B1	1	
			2-3-A4-6	347.0	178.03	277.82	247.59	51.31	71.35	2/B1	1	
			2-3-A4-7	375.0	217.50	435.00	435.00	58.00	116.00	2	1	
			2-3-A4-8	367.0	212.86	425.72	425.72	58.00	116.00	2	1	
			2-3-A4-9	433.0	251.14	502.28	502.28	58.00	116.00	2	1	
			2-3-A4-10	463.0	268.54	537.08	537.08	58.00	116.00	2	1	
			2-3-A4-11	412.0	238.96	477.92	477.92	58.00	116.00	2	1	
			2-3-A4-12	397.0	188.32	326.92	300.79	47.44	75.77	2/B1	1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변경	2-3-D1 (가구번호)	동호리 611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D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2층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11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D1-1, -2, -3, -4, -6, -7, -8, -9, -10, -11, -12		
기정	2-3-A5 (가구번호)	동호리 627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E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8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A5-1, -2, -3, -4, -5, -6, -7, -8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획지번호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객실수 (실)	
			2-3-A5-1	335.0	194.30	388.60	388.60	58.00	116.00	2	1	
			2-3-A5-2	339.0	196.62	393.24	393.24	58.00	116.00	2	1	
			2-3-A5-3	335.0	188.32	326.92	300.79	56.21	89.79	2/B1	1	
			2-3-A5-4	337.0	195.46	390.92	390.92	58.00	116.00	2	1	
			2-3-A5-5	335.0	194.30	388.60	388.60	58.00	116.00	2	1	
			2-3-A5-6	334.0	193.72	387.44	387.44	58.00	116.00	2	1	
			2-3-A5-7	336.0	194.88	389.76	389.76	58.00	116.00	2	1	
			2-3-A5-8	347.0	201.26	402.52	402.52	58.00	116.00	2	1	
변경	2-3-E (가구번호)	동호리 627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E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8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E-1, -2, -3, -4, -5, -6, -7, -8							
기정	2-3-A6 (가구번호)	동호리 580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A2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6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A6-1, -2, -3, -4, -5, -6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획지번호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객실수 (실)		
			2-3-A6-1	345.0	200.10	400.20	400.20	58.00	116.00	2	1		
			2-3-A6-2	349.0	202.42	404.84	404.84	58.00	116.00	2	1		
			2-3-A6-3	361.0	209.38	418.76	418.76	58.00	116.00	2	1		
			2-3-A6-4	360.0	208.80	417.60	417.60	58.00	116.00	2	1		
			2-3-A6-5	346.0	200.68	401.36	401.36	58.00	116.00	2	1		
			2-3-A6-6	371.8	215.64	431.29	431.29	58.00	116.00	2	1		
변경	2-3-A2 (가구번호)	동호리 580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A2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6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A2-1, -2, -3, -4, -5, -6								
기정	2-3-A7 (가구번호)	동호리 582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A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3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A7-1, -2, -3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획지번호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객실수 (실)	
			2-3-A7-1	345.0	200.10	400.20	400.20	58.00	116.00	2	1	
			2-3-A7-2	347.0	201.26	402.52	402.52	58.00	116.00	2	1	
			2-3-A7-3	345.0	200.10	400.20	400.20	58.00	116.00	2	1	
변경	2-3-A1 (가구번호)	동호리 582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A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3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A1-1, -2, -3							
기정	2-3-A8 (가구번호)	동호리 565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B2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342㎡/589㎡	
			용적율		200% 이하						684㎡/589㎡	
			높이		최고 : 2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A8							
변경	2-3-B2 (가구번호)	동호리 565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B2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최고 : 2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3-A9 (가구번호)	동호리 573 일대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B2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B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9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A9-1, -2, -3, -4, -5, -6, -7, -8, -9							
			획지번호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객실수 (실)
			2-3-A9-1		347.0	201.26	402.52	402.52	58.00	116.00	2	1
			2-3-A9-2		344.0	199.52	399.04	399.04	58.00	116.00	2	1
			2-3-A9-3		380.0	220.40	440.80	440.80	58.00	116.00	2	1
			2-3-A9-4		378.0	219.24	438.48	438.48	58.00	116.00	2	1
			2-3-A9-5		366.0	212.28	424.56	424.56	58.00	116.00	2	1
			2-3-A9-6		425.0	246.50	493.00	493.00	58.00	116.00	2	1
			2-3-A9-7		460.0	266.80	533.60	533.60	58.00	116.00	2	1
2-3-A9-8		570.0	330.60	661.20	661.20	58.00	116.00	2	1			
2-3-A9-9		374.0	216.92	433.84	433.84	58.00	116.00	2	1			
변경	2-3-B1 (가구번호)	동호리 573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B1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9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3-A10 (가구번호)	동호리 586 일대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B1-1, -2, -3, -4, -5, -6, -7, -8, -9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B3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6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A10-1, -2, -3, -4, -5, -6							
			획지번호		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객실수 (실)
			2-3-A10-1		392.0	227.36	454.72	454.72	58.00	116.00	2	1
			2-3-A10-2		439.0	254.62	509.24	509.24	58.00	116.00	2	1
			2-3-A10-3		494.0	286.52	573.04	573.04	58.00	116.00	2	1
			2-3-A10-4		381.0	220.98	441.96	441.96	58.00	116.00	2	1
2-3-A10-5		354.0	205.32	410.64	410.64	58.00	116.00	2	1			
2-3-A10-6		351.0	203.58	407.16	407.16	58.00	116.00	2	1			
변경	2-3-B3 (가구번호)	동호리 586 일대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설해별담B3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최고 :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배치	도면참조	6획지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B3-1, -2, -3, -4, -5, -6	

■ 더 하우스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3-C	상양혈리 154-14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더 하우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지상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2획지	
			형태		경사형 /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C-1, -2								
			획지번호		부지 면적 (㎡)	건축 면적 (㎡)	건축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 (층)	객 실 수 (실)	
			2-3-C1-1		990	156.63	156.63	156.63	15.83	15.83	1	1	
			2-3-C2-2		990	151.04	237.39	237.39	15.27	23.99	2	1	
변경	2-3-F	상양혈리 154-14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더 하우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용적율		200% 이하							각 획지별로 적용	
			높이		지상 2층							각 획지별로 적용	
			배치		도면참조							2획지	
			형태		경사형 /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해당획지 (획지번호)		2-3-F-1, -2								

■ 숙박D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3-D	동호리 510-54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숙박D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9,424㎡/37,678 ㎡
			용적율	200% 이하			8,170㎡/37,878 ㎡
			높이	최고 : 2층			
			배치	도면참조			38동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구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변경	2-3-G	동호리 510-54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숙박D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최고 : 2층			
			배치	도면참조			38동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구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 숙박E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2-3-E	동호리 산296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숙박E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3,472㎡/13,893 ㎡
			용적율		200% 이하	3,010㎡/13,893 ㎡
			높이		지상 2층	
			배치		도면참조	14동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구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변경	2-3-H	동호리 산296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숙박E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지상 2층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배치	도면참조	14동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구조색: 어두운 회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 아울렛몰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3-1	동호리 510-153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아울렛몰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9,690㎡/34,209㎡
			용적율		200% 이하	27,813㎡/34,209㎡
			높이		최고 : 5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지붕 : 평면형 지붕	
			색채		▣ 구조색: 노란하양, 진한갈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진한갈색, 강조색: 선명한 빨강	
변경	3-1	동호리 510-153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아울렛몰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최고 : 5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지붕 : 평면형 지붕	
			색채		▣ 구조색: 노란하양, 진한갈색, ▣ 보조색: 밝은 회 파랑, 진한갈색, 강조색: 선명한 빨강	

■ 지역특산물상가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3-2	동호리 산296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지역특산물상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40㎡/3,330㎡
			용적율	200% 이하	3,200㎡/3,330㎡
			높이	최고 : 5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지붕 :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파랑 띠 회색, ▣ 보조색: 노란 하양, 밝은 회 파랑	
변경	3-2	동호리 산296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7호 판매시설	지역특산물상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최고 : 5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지붕 :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파랑 띠 회색, ▣ 보조색: 노란 하양, 밝은 회 파랑	

■ 근린생활시설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3-3	동호리 503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400㎡/2,597㎡
			용적율	200% 이하	800㎡/2,597㎡
			높이	최고 : 2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지붕 :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파랑 띠 회색 ▣ 보조색: 노란 하양, 밝은 회 파랑	
변경	3-3	동호리 503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율	200% 이하	
			높이	최고 : 2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지붕 :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파랑 띠 회색 ▣ 보조색: 노란 하양, 밝은 회 파랑	

■ 클럽하우스 및 지원시설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4-1-30	동호리 510-28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및 지원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8,207㎡/21,604 ㎡
			용적율	100% 이하			7,891㎡/21,604 ㎡ 13,565㎡(지하층 포함)
			높이	지상 2층/ 지하1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평면형 /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회 파랑, 노랑하양 ▣ 보조색: 진한갈색			
변경	4-1-30	동호리 510-28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및 지원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이	지상 2층/ 지하1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평면형 /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회 파랑, 노랑하양 ▣ 보조색: 진한갈색			

■ 휴게소(티하우스)-27홀 골프장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4-1-31	동호리 510-18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	티하우스 3동 (27홀골프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237㎡/608㎡	
			용적율	100%이하	237㎡/608㎡	
			높이	최고 : 1층		
			배치	도면참조	3동	
			형태	지붕 : 평면형 지붕		
			색채	▣ 벽체 : 주황색 / 지붕 : 갈색		
변경	4-1-31	동호리 510-18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	티하우스 3동 (27홀골프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율	100%이하		
			높이	최고 : 1층		
			배치	도면참조	3동	
			형태	지붕 : 평면형 지붕		
			색채	▣ 벽체 : 주황색 / 지붕 : 갈색		

■ 휴게소(티하우스)-18홀골프장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4-2-21	밀양리 산75-1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	티하우스 1동 (18홀 골프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119㎡/1,015㎡	
			용적율	100% 이하	119㎡/1,015㎡	
			높이	지상 1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주황 ▣ 보조색: 밝은 회 노랑, 밝은 회 파랑		
변경	4-2-21	밀양리 산75-1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골프장 부대시설	티하우스 1동 (18홀 골프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이	지상 1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주황 ▣ 보조색: 밝은 회 노랑, 밝은 회 파랑		

■ 체육관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4-3	동호리 산296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체육관	체육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1,800㎡/6,662㎡	
			용적율	100% 이하	3,600㎡/6,662㎡	
			높이	최고 : 2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지붕 :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파랑 띠 회색, ▣ 보조색: 노란 하양, 밝은 회 파랑		
변경	4-3	동호리 산296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중 체육관	체육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이	최고 : 2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지붕 :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파랑 띠 회색, ▣ 보조색: 노란 하양, 밝은 회 파랑		

■ 박물관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4-4	와리 산9-2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중 전시장	박물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336㎡/2,055㎡
			용적율	100% 이하	672㎡/2,055㎡
			높이	최고 : 2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지붕 :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파랑 띠 회색, □ 보조색: 노란 하양, 밝은 회 파랑	
변경	4-4	와리 산9-2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5호 문화및집회시설중 전시장	박물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이	최고 : 2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지붕 :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파랑 띠 회색, □ 보조색: 노란 하양, 밝은 회 파랑	

■ 미술관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4-6	동호리 510-1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미술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1,700㎡/16,888㎡
			용적율	100% 이하	3,400㎡/16,888㎡ 4,000㎡(지하층 포함)
			높이	지상2층/ 지하1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회 파랑, 노랑 하양 □ 보조색: 진한갈색	
변경	4-6	동호리 510-1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미술관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이	지상2층/ 지하1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평면형 지붕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색채	□ 주조색: 밝은 회 파랑, 노랑 하양 □ 보조색: 진한갈색	

■ 예지물창고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4-7	와리 22-5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	예지물창고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924㎡/2,690㎡
			용적율	100% 이하	813㎡/2,690㎡
			높이	지상 1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경사형 지붕	
변경	4-7	와리 22-5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창고	예지물창고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이	지상 1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경사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회색 □ 보조색: 목탄색, 어두운 회색	

■ 직원숙소C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6-7	와리 산9-2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2호 기숙사	직원숙소C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1,150㎡/6,185㎡
			용적율	100% 이하	4,360㎡/6,185㎡
			높이	최고 : 4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평면형 지붕	
			색채	□ 주조색: 밝은 회색 □ 보조색: 목탄색, 어두운 회색	
기정	6-7	와리 산9-2 일대	용 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제3의5 별표1 제2호 기숙사	직원숙소C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이	최고 : 4층	
			배치	도면참조	1동
			형태	평면형 지붕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색채	□ 주조색: 밝은 회색 □ 보조색: 목탄색, 어두운 회색	

■ 관광단지 지원시설

구분	도면번호	위치	항목	계획내용	비고
기정	6-8	동호리 504 일대	용 도	허용	관광단지 지원시설 (장비창고, 직원숙 소, 세차장, 분리수거창고, 그린모아 창고, 유류저장소, LPG저장소)
				불허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이	지상 4층	
			배치	도면참조	
			형태	평면형 / 경사형 지붕	
			색채	주조색: 밝은 회색 / 보조색: 목탄색, 어두운 회색	
					9동
변경	6-8	동호리 504 일대	용 도	허용	관광단지 지원시설 (장비창고, 직원숙 소, 세차장, 분리수거창고, 그린모아 창고, 유류저장소, LPG저장소)
				불허	
			건폐율	40% 이하	
			용적율	100% 이하	
			높이	지상 4층	
			배치	도면참조	
			형태	평면형 / 경사형 지붕	
			색채	주조색: 밝은 회색 / 보조색: 목탄색, 어두운 회색	
					9동

2) 건축물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사유서

구분	획지번호				위치		변경내용(면적 m ²)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변경	1-1	주차장	1-1	주차장	동호리 506-1 일대	동호리 506-1 일대	16,939.0	16,939.0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1-4	창고	1-4	창고	와리 산6-1일대	와리 산6-1일대	2,403.0	2,403.0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1-A	관광호텔A	2-1-A	관광호텔A	밀양리 산75 일대	밀양리 산75 일대	25,976.0	25,976.0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1-B	관광호텔B	2-1-B	관광호텔B	동호리 510-20 일대	동호리 510-20 일대	36,304.0	36,304.0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2-A	설해온천/골프텔	2-2-A	설해온천/골프텔	밀양리 4 일대	밀양리 316 일대	20,730.0	20,785.2	증) 55.2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2-2-C	마운틴스테이	2-2-C	마운틴스테이	동호리 564 일대	동호리 564 일대	19,670.2	19,670.2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2-D	설해수립	2-2-D	설해수립	밀양리 산50-1 일대	밀양리 산50-1 일대	45,257.0	45,257.0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2-E	휴양 콘도미니엄 E	2-2-E	휴양 콘도미니엄 E	밀양리 산48 일대	밀양리 산48 일대	17,153.0	17,153.0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3-A7	설해별담A1	2-3-A1	설해별담A1	동호리 582 일대	동호리 582 일대	1,037.0	1,037.0		○획지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3-A6	설해별담A2	2-3-A2	설해별담A2	동호리 580 일대	동호리 580 일대	1,998.0	2,132.8	증) 134.8	○획지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변경	2-3-A9	설해별담B1	2-3-B1	설해별담B1	동호리 573 일대	동호리 573 일대	3,644.0	3,644.0		○획지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3-A8	설해별담B2	2-3-B2	설해별담B2	동호리 565 일대	동호리 565 일대	589.0	589.0		○획지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3-A10	설해별담B3	2-3-B3	설해별담B3	동호리 586 일대	동호리 586 일대	2,411.0	2,411.0		○획지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3-A3	설해별담C1	2-3-C1	설해별담C1	동호리 598 일대	동호리 598 일대	3,958.0	3,958.0		○획지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3-A1	설해별담C2	2-3-C2	설해별담C2	동호리 602 일대	동호리 602 일대	4,083.0	4,083.0		○획지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3-A4	설해별담D1	2-3-D1	설해별담D1	동호리 611 일대	동호리 611 일대	4,628.0	4,628.0		○획지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구분	획지번호				위치		변경내용(면적 m ²)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변경	2-3 -A2	설해별담D2	2-3 -D2	설해별담D2	동호리 626 일대	동호리 626 일대	2,164.0	2,164.0		○ 획지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3 -A5	설해별담E	2-3 -E	설해별담E	동호리 627 일대	동호리 627 일대	2,698.0	2,698.0		○ 획지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3 -C	더 하우스	2-3 -F	더 하우스	상양혈리 154-14 일대	상양혈리 391 일대	1,980.0	1,983.0	증) 3.0	○ 가구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2-3 -D	숙박D	2-3 -G	숙박D	동호리 510-54 일대	동호리 510-54 일대	37,678.0	37,678.0		○ 가구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2-3 -E	숙박E	2-3 -H	숙박E	동호리 산296 일대	동호리 산296 일대	13,893.0	13,893.0		○ 가구번호 변경 및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3-1	아울렛몰	3-1	아울렛몰	동호리 510-153 일대	동호리 510-153 일대	34,209.0	34,209.0		○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3-2	지역특산물 상가	3-2	지역특산물 상가	동호리 산296 일대	동호리 산296 일대	3,330.0	3,330.0		○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3-3	근린생활시 설	3-3	근린생활시 설	동호리 503 일대	동호리 503 일대	2,597.0	2,597.0		○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4-1 -30	클럽하우스 및 지원시설	4-1 -30	클럽하우스 및 지원시설	동호리 510-28 일대	동호리 645 일대	21,647.0	21,628.9	감) 18.1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 적변경
변경	4-1 -31	휴게소 (티하우스)	4-1 -31	휴게소 (티하우스)	동호리 510-18 일대	동호리 510-18 일대	608.0	608.0		○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4-2 -21	휴게소 (티하우스)	4-2 -21	휴게소 (티하우스)	밀양리 산75-1 일대	밀양리 산75-1 일대	1,015.0	1,015.0		○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4-3	체육관	4-3	체육관	동호리 산296 일대	동호리 산296 일대	6,662.0	6,662.0		○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4-4	박물관	4-4	박물관	와리 산9-2 일대	와리 산9-2 일대	2,055.0	2,055.0		○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4-6	미술관	4-6	미술관	동호리 510-1 일대	동호리 510-1 일대	16,888.0	16,888.0		○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4-7	예지물창고	4-7	예지물창고	와리 22-5 일대	와리 229 일대	2,697.0	2,681.4	감) 15.6	○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 적변경

구분	획지번호				위치		변경내용(면적 m ²)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변경	6-7	직원숙소C	6-7	직원숙소C	와리 산9-2 일대	와리 산9-2 일대	6,185.0	6,185.0		○비고란 건축면적 삭제
변경	6-8	관광단지 지원시설	6-8	관광단지 지원시설	동호리 504 일대	동호리 644 일대	28,363.0	28,342.9	감) 20.1	○관광단지 내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 적변경

주 : 『기정』 은 양양군고시 제2024-172호 기준 (2024. 12. 20)

설해온천 온천개발계획(변경)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 지구의 명칭: 설해온천 온천개발계획(변경)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 위 치: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밀양리 4번지 일원
- 지 정 면 적: 온천개발계획 기정)155,430.0㎡ 변경)155,435.8㎡ (증 5.8㎡),
 온천원보호지구 기정) 315,007.0㎡ 변경)315,015.0㎡ (증 8.0㎡)
- 지 정 사 유: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변경 / 확정측량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
- 지 형 도 면: 게재생략
- 기 타: 지형도면 및 토지조서 등 고시내용은 양양군(관광과)에서 열람

1. 온천개발계획구역 편입토지조서(변경)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합계		73필지		473,656.9	155,435.8	-	-
1	동호리	510 - 6	대	11.0	1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	동호리	510 - 168	대	797.0	79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	동호리	510 - 169	대	7,307.3	5,681.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	동호리	510 - 11	임	1,140.0	1,11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	동호리	510 - 9	임	980.0	93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	동호리	510 - 47	임	6,087.0	4,45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	동호리	510 - 28	채	32.0	3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	동호리	510 - 172	채	12,284.0	12,08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	동호리	510 - 173	채	327.2	327.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	동호리	510 - 174	채	19,361.8	44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1	동호리	510 - 149	채	81.0	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	동호리	510 - 176	채	173.3	13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	동호리	502 - 8	도	81.0	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4	동호리	502 - 10	도	1,075.0	1,06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	동호리	502 - 11	도	178.5	178.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	동호리	510 - 1	임	14,643.0	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7	동호리	510 - 165	임	3.0	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	동호리	510 - 166	임	2,700.6	31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	동호리	510 - 167	임	2,763.0	2,76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0	동호리	510 - 10	임	1,465.0	1,46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1	동호리	510 - 8	채	48,758.0	8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	동호리	510 - 56	임	11,677.0	3,771.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3	동호리	507 - 7	답	96.0	8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4	동호리	510 - 54	임	14,164.0	8,5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5	동호리	510 - 146	임	147.0	14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6	동호리	510 - 12	임	3,324.0	2,00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7	동호리	510 - 13	채	6,995.0	4,7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8	밀양리	1	전	1,088.0	867.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9	밀양리	2	답	387.0	387.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0	밀양리	3	답	2,324.0	268.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1	밀양리	4 - 10	채	777.4	445.6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	밀양리	4 - 11	도	141.0	14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3	밀양리	4 - 30	도	2,108.9	2,102.4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4	밀양리	4	채	1,262.0	1,26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	밀양리	4 - 19	채	960.0	5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	밀양리	4 - 22	채	12,136.9	12,136.9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7	밀양리	4 - 23	채	0.2	0.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	밀양리	4 - 8	임	27,439.0	17,11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	밀양리	4 - 26	임	831.5	831.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40	밀양리	4 - 27	임	345.9	345.9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1	밀양리	4 - 28	임	1,377.0	1,37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2	밀양리	4 - 2	대	22.0	2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3	밀양리	4 - 24	대	2,667.5	2,667.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4	밀양리	4 - 9	임	8,149.0	5,57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	밀양리	9	답	307.0	16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6	밀양리	12 - 1	전	9,730.0	6,23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	밀양리	309 - 14	구	3,668.0	50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8	밀양리	산50 - 1	임	8,379.0	4,62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9	밀양리	산70 - 1	임	64,661.0	5,30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	밀양리	산75	임	13,917.0	9,68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1	밀양리	산78	임	12,397.0	4,96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2	밀양리	산78 - 1	임	99.0	9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3	밀양리	산79	임	16,487.0	4,54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4	밀양리	산79 - 4	임	4,868.0	2,00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5	밀양리	산79 - 3	임	10,950.0	33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	밀양리	산79 - 1	임	6,995.0	1,25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7	상양혈리	154 - 3	체	14,144.0	3,1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8	상양혈리	154 - 4	체	37,384.0	80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	상양혈리	154 - 8	체	3,103.0	79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0	상양혈리	154 - 9	체	4.5	0.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1	상양혈리	154 - 10	임	267.0	12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2	상양혈리	154 - 11	도	1,123.0	7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3	상양혈리	154 - 32	도	39.1	39.1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4	상양혈리	154 - 12	임	511.0	20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5	상양혈리	154 - 13	임	701.0	7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6	상양혈리	154 - 14	임	19,425.0	5,67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7	상양혈리	154 - 33	임	1,386.5	1,386.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8	상양혈리	154 - 34	임	95.0	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9	상양혈리	154 - 19	임	206.0	2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0	상양혈리	154 - 20	임	1,840.0	1,84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1	상양혈리	154 - 31	임	2,921.0	2,90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2	상양혈리	159	체	18,905.0	21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3	상양혈리	159 - 7	체	474.8	474.8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 온천원보호지구 편입토지조서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합 계		108필지		595,206.9	315,015.0	—	—
1	동호리	510 - 6	대	11.0	1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	동호리	510 - 168	대	797.0	79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	동호리	510 - 169	대	7,307.3	6,33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	동호리	510 - 11	임	1,140.0	1,11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	동호리	510 - 9	임	980.0	93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	동호리	510 - 47	임	6,087.0	4,45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	동호리	510 - 28	채	32.0	3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	동호리	510 - 172	채	12,284.0	12,08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	동호리	510 - 173	채	327.2	327.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	동호리	510 - 174	채	19,361.8	2,46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1	동호리	510 - 149	채	81.0	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2	동호리	510 - 176	채	173.3	13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3	동호리	502 - 8	도	81.0	8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4	동호리	502 - 10	도	1,075.0	1,06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5	동호리	502 - 11	도	178.5	178.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6	동호리	510 - 1	임	14,643.0	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7	동호리	510 - 165	임	3.0	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8	동호리	510 - 166	임	2,700.6	31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9	동호리	510 - 167	임	2,763.0	2,76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0	동호리	510 - 10	임	1,465.0	1,46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1	동호리	510 - 8	채	48,758.0	8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2	동호리	510 - 56	임	11,677.0	3,771.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3	동호리	507 - 7	답	96.0	9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4	동호리	510 - 54	임	14,164.0	8,5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5	동호리	510 - 146	임	147.0	14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6	동호리	510 - 12	임	3,324.0	2,00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7	동호리	510 - 13	채	6,995.0	4,7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28	밀양리	1	전	1,088.0	867.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29	밀양리	2	답	387.0	387.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0	밀양리	3	답	2,324.0	2,324.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31	밀양리	4 - 10	채	777.4	46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2	밀양리	4 - 11	도	141.0	14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3	밀양리	4 - 29	도	3.0	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34	밀양리	4 - 30	도	2,108.9	2,108.9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5	밀양리	4	채	1,262.0	1,26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6	밀양리	4 - 19	채	960.0	96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7	밀양리	4 - 20	채	45.0	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8	밀양리	4 - 21	채	320.0	32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39	밀양리	4 - 22	채	12,136.9	12,136.9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0	밀양리	4 - 23	채	0.2	0.2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1	밀양리	4 - 8	임	27,439.0	27,43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2	밀양리	4 - 25	임	58.0	1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3	밀양리	4 - 26	임	831.5	831.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4	밀양리	4 - 27	임	345.9	345.9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5	밀양리	4 - 28	임	1,377.0	1,37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6	밀양리	4 - 2	대	22.0	2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7	밀양리	4 - 24	대	2,667.5	2,667.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8	밀양리	4 - 9	임	8,149.0	5,57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49	밀양리	6	답	383.0	38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0	밀양리	7	답	902.0	90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1	밀양리	8 - 1	답	1,950.0	1,95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2	밀양리	8 - 2	답	2,595.0	2,57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3	밀양리	9	답	307.0	30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4	밀양리	10	답	3,322.0	3,230.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55	밀양리	11 - 2	답	1,871.0	1,12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6	밀양리	11 - 1	답	1,653.0	1,45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7	밀양리	12	답	3,058.0	44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8	밀양리	12 - 1	전	9,730.0	9,73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59	밀양리	113	답	1,054.0	118.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60	밀양리	120 - 2	답	3,418.0	1,766.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61	밀양리	127 - 1	답	1,395.0	73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2	밀양리	128	전	2,588.0	2,57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3	밀양리	129 - 1	전	1,114.0	85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4	밀양리	148 - 3	답	142.0	13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5	밀양리	148 - 2	도	3,131.0	88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6	밀양리	149	전	1,898.0	1,89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67	밀양리	150 - 6	전	2,569.0	447.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68	밀양리	150 - 2	전	165.0	111.0	권기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47, 25동 1005호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69	밀양리	151 - 2	도	810.0	75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0	밀양리	151 - 1	답	2,631.0	61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1	밀양리	167 - 2	도	2,307.0	11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2	밀양리	309 - 14	구	3,668.0	3,37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3	밀양리	309 - 15	구	7,259.0	87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4	밀양리	산50 - 1	임	8,379.0	4,62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5	밀양리	산59 - 2	도	2,281.0	5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6	밀양리	산65	임	3,967.0	99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7	밀양리	산67 - 1	임	16,066.0	15,82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8	밀양리	산67 - 2	도	2,182.0	51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79	밀양리	산68	임	8,033.0	2,6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0	밀양리	산70 - 1	임	64,661.0	52,31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1	밀양리	산73 - 1	임	30,977.0	18,524.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2	밀양리	산74	임	9,620.0	9,46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3	밀양리	산75 - 1	임	1,653.0	1,65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4	밀양리	산75	임	13,917.0	12,6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5	밀양리	산78	임	12,397.0	10,39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6	밀양리	산78 - 1	임	99.0	9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7	밀양리	산79	임	16,487.0	9,992.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8	밀양리	산79 - 4	임	4,868.0	2,00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89	밀양리	산79 - 3	임	10,950.0	75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0	밀양리	산79 - 1	임	6,995.0	2,81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1	상양혈리	154 - 3	체	14,144.0	3,17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2	상양혈리	154 - 4	체	37,384.0	803.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3	상양혈리	154 - 8	체	3,103.0	79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4	상양혈리	154 - 9	체	4.5	1.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5	상양혈리	154 - 10	임	267.0	129.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6	상양혈리	154 - 11	도	1,123.0	70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7	상양혈리	154 - 32	도	39.1	39.1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8	상양혈리	154 - 12	임	511.0	20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99	상양혈리	154 - 13	임	701.0	7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0	상양혈리	154 - 14	임	19,425.0	5,72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1	상양혈리	154 - 33	임	1,386.5	1,386.5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2	상양혈리	154 - 34	임	95.0	95.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3	상양혈리	154 - 19	임	206.0	206.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연번	행정구역	지번	지 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04	상양혈리	154 - 20	임	1,840.0	1,84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5	상양혈리	154 - 31	임	2,921.0	2,907.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6	상양혈리	159	채	18,905.0	218.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7	상양혈리	159 - 6	채	130.0	130.0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108	상양혈리	159 - 7	채	474.8	474.8	주식회사새서울레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산250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09호

계촌천 하천점용허가(간척교)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하천의 명칭		간척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국가철도공단(강원본부장)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원로 2650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목 적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3공구)			
	개 요	시설명	재 원	점용면적(㎡)	
				영구	일시
		간척교	L=125.0m, B=10.9m	931	615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381-6 외 10필지 (NO.4+200)			
	면 적	영구 : 931㎡ 일시 : 615㎡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영구 : 시설물 존치시까지 일시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9.03.19.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10호

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평창 계촌천 인도교) 고시

하천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하천공사의 명칭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3공구)			
점 용 자 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국가철도공단(강원본부장)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원로 2650			
공 사 위 치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381-6 외 10필지 (No.4+200)			
공사의 목적 및 사유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3공구)			
공 사 기 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9.03.19.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점용면적(㎡)	토지소유자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381-6	구	3,545	296.3(영구), 325.6(일시)	국토교통부
	500-4	제	5344	118.7(영구), 64.2(일시)	국토교통부
	546-6	천	855	109.9(영구)	화천군
	546-9	천	89.6	34.1(영구), 55.5(일시)	화천군
	500-2	제	801.1	21.2(영구), 101(일시)	국토교통부
	500-1	제	40.1	8.5(영구)	화천군
	546-5	제	90.6	90.6(영구)	화천군
	545-3	천	2,762	104.6(영구), 44.7(일시)	화천군
	546-8	제	44.85	20.1(영구), 24.89(일시)	화천군
	546-13	제	41.6	41.69(영구)	국토교통부
	545-4	제	271.8	85.6(일시)	국토교통부
	합 계		9,076.1	931.2(영구), 615.8(일시)	

공 고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7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신규 등록(1개 단체)

구 분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등록일자	비고
1	신규 등록	제2025-강원특별자치도-2호	사단법인 강원미래소비자 행동	노은숙	원주시 나비허리길 5, 101동 412호	소비자 교육, 상담, 정보제공 및 소비자 문제 조사연구 등	2025.5.9.	

■ 변경 등록(1개 단체)

구 분		등록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주 된 사 업	등록일자	비고
1	변경전	제2024-강원특별자치도-2호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	강삼영	춘천시 삭주로 18, 2층	교육정책연구, 교육도서 및 자료의 발간, 세미나 및 정책포럼 개최, 학부모 및 교직원연수 지원 등	2024.5.21.	대표자 변경 (2025.5.19.)
	변경후			손상달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77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중 교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등록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5-7호
2. 모 집 자 : 두위봉철쭉축제위원회
3. 사무소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141 신동읍변영회
4. 모집목적 : 제32회 두위봉철쭉축제&산맥패스티벌 행사 개최
5. 모집지역 : 전국
6. 모집기간 : 2025. 6. 1. ~ 2025. 12. 31. ※ 사용기한 : 2025. 12. 31.
7.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8. 모집목표액 : 15,000,000원
9. 모집방법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기부금품 모집 및 홍보
10. 모집비용 : 1,100,000원
11.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및 지정장소 보관
12. 모집상황 공개 홈페이지 : <http://cafe.naver.com/3783345>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7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등록 중 교부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등록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제2025-8호
2. 모 집 자 : 함백산야생화축제위원회
3. 사무소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46
4. 모집목적 : 2025년 정선함백산야생화축제위원회 개최
5. 모집지역 : 전국
6. 모집기간 : 2025. 5. 28. ~ 2025. 9. 30. ※ 사용기한 : 2025. 10. 30.
7.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8. 모집목표액 : 70,000,000원
9. 모집방법 :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기부금품 모집 및 홍보
10. 모집비용 : 0원
11. 보관방법 : 금융기관 예치 및 지정장소 보관
12. 모집상황 공개 홈페이지 : www.gogohan.kr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894호

2024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선발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한 모범 운수종사자를 발굴·시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2025년 6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시상부문: 2024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2. 시상인원: 15명(시외버스 3, 시내·농어촌 3, 전세버스 1, 일반택시 4, 개인택시 4)
3. 후보자 추천
 - 가. 추천기간: 2025. 6. 16. ~ 6. 30.(14일간)
 - 나. 추천권자: 시장·군수 또는 유관기관 및 운수단체·시민단체 등
 - 다. 추천방법
 - 1) 시장·군수는 직접 발굴하여 추천
 - 2) 유관기관 단체장은 추천서를 도에 직접 제출
 - 3) 추천대상자
 - 공고일 현재 도내 여객자동차운수업체에서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근무한 무사고 운수종사자로서, 승객에게 친절봉사를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교통분야와 관련하여 공헌이 뚜렷한 자
 - 4) 제출서류: 추천서 1부, 공적조서 1부,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언론보도, 수상실적, 봉사활동 등 공적 증빙자료 제출 시 심사에 반영되며, 추천 인원이 선발 정원을 초과할 경우 심사(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4. 수상자 발표: 2025. 8월말(개별통보)
5. 시상일시
 - 가. 시상일시: 2025. 9월 중
 - 나. 시상내용: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및 친절서비스왕 상패
6.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249-3544, FAX 249-4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서

(1) 추천부문	2024년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2) 인적사항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도내근무기간	(~ 년 월)		
	주소		직급	(계급)		
	소속		직위	(직책)		
(3) 주요 학력 및 경력						
년월일	이력		년월일	이력		
(4) 과거 포상기록						
년월일	내용		년월일	내용		
(5) 추천의견(100자 내외)						

위 사람을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추천자 :
(직인)

시장·군수

또는 유관기관·민간단체장

※ 첨부서류 : 기타 공적을 증빙하는 자료[관련 언론보도(인터넷 기사 등),
수상실적(기관표창·감사패 등), 사회봉사활동(불우이웃돕기 등), 행사지원활동(행사장
교통정리 등)] 1부

공 적 조 서

성명	(한자)		
생년월일	년월일	성별	
국적 (외국인의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급·계급		직위(직책)	
포상종류		추천순위	
공적분야		수공기간	
공적요지(70자 내외)			
조 사 자 *도 및 시군 담당 부서장			
소속	시·군 교통부서		
직위 *대외직명표시	교통과장	성명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시장·군수 성명 홍길동 (인)			

※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1조(포상의추천)에 따라 추천자는 도 실국장·도 소속기관장·도 산하기관장·시장·군수가 되며, 시군 실국장, 민간단체장 등은 추천권자가 될 수 없음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월일	이 력	년월일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공적내용			

추천자 명부(개인)

연번	소 속 (주 소)	직 위 (직 업)	성 명 (생년월일)	수공 기간	공적요지	포상 종류
						표창장
						표창장
						표창장

도지사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아래 사항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도지사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지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사실확인서 발급 및 교부, 도지사 포상 대장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등은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피추천인 신고의무 사항

-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관련기관 포함)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위 본인은 도지사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거나 포상관련 민원이 해당되어 도지사 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성명

(서명)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개인)

1. 인적사항

소 속(주소)			
직 위(직급)		생년월일	
성 명		한 자	

2. 공적내용

- ▶ 공적조서 내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히 기재

3. 확인내용

-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 ▶ 표창 추천제한사항 확인

위 추천대상자의 공적내용이 사실임을 현지조사, 본인면담, 관련기관(단체),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결격사유 및 추천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 인 자】 시·군 교통부서장

(인)

* 확인자 : 시군 담당 부서장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902호

강원특별자치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홍천군에서 추진하는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5년 6월 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개최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설명 및 지역 주민 등의 의견 청취

2.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5. 6. 23. (월) 14:00
○ 장 소 : 영귀미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2층) ※ 홍천군 영귀미면 공작산로 497

3. 종합계획(변경) 개요

- 계획의 목적
-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변경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08년 ~ 2026년
- 공간적 범위

사군명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춘천	서면, 사북면	근화동, 소양동, 약사명동, 강남동
원주		소초면, 호저면, 지정면, 태장1동, 태장2동, 우산동, 봉산동, 행구동
태백		문곡소도동
홍천		영귀미면, 서석면
횡성		횡성읍, 서원면, 청일면, 공근면, 갑천면, 둔내면, 우천면, 강림면
영월		상동읍, 중동면, 하동면
철원	동송읍	갈말읍
화천	사내면	

- 주요 내용 : 홍천군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변경 사항 반영
- 조경수 추가 식재 및 부대시설(진입로, 세족장 등) 설치

4. 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공청회 폐회 이후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아래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25. 6. 25.(수) 18:00(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방문·우편(강원특별자치도청 제2별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또는 이메일(chyj1119@korea.kr)

※ 제출서식 : 강원특별자치도청 누리집(<https://state.gwd.go.kr/portal>) “도정마당 - 공고/고시”란 게시

5.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 033-249-3032) 또는 홍천군 산림과(☎ 033-430-27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

의 건 제 출 서

의 건 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주 소			
의 건 내 용				

상기와 같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 . .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인)

시 군 행정

춘천시 고시 제2025-296호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 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춘천시 고시 제2023-540호(2023. 11. 2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연구시설(정원소재실용화센터) 부지조성 사업인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 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춘 천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취소(폐지) 사유 :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폐지)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중도동 260-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 연구시설)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연구시설(정원소재실용화센터) 부지 조성
4.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12,748㎡
 - 나. 규 모 : 연구시설(정원소재실용화센터) 부지 조성 12,748㎡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산림청장
 -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6. 기존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부터 5일
 -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 권리			비고
					결정면적	기타면적	합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중도동	260-1	유	16,846	11,705		11,705	춘천시					
2	중도동	294-2	천	6,678	1,043	108	1,151	춘천시					
3	중도동	294-4	천	1,600		562	562	국(건설부)					
합계					12,748	670	13,418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춘천시 공고 제2025-1122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26호 소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안)
열람공고

춘천시 온의동 597번지 일원 온의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소공원 부지 내 구조물(축조블럭) 설치공사인 춘천 도시
계획시설(공간시설: 26호 소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90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안)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춘 천 시 장

■ 사업시행자 지정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춘천시 온의동 59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26호 소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구조물(축조블럭) 설치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1,984㎡
 - 나. 규 모 : 구조물 105㎡, 성토사면 1,879㎡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아이디앤콘스(주)
 -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제티2-515호)

■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온의동 59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춘천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26호 소공원)사업
 - 나. 사업의 명칭: 구조물(축조블럭) 설치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1,984㎡

나. 규 모 : 구조물 105㎡, 성토사면 1,879㎡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아이디앤콘스(주)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제터2-515호)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준공예정일 : 2025. 10.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 5. 30. ~ 2025. 6. 19. (14일간)

나. 장 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 ☎033-250-317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외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1	온의동	597	공	7,880.6	1,984	춘천시					
합 계				7,880.6	1,984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춘천시 공고 제2025-1140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대로3류3호선, 공간시설: 광장10호)사업 실시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춘천시 고시 제2024-426호(2024. 8. 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춘천시 삼천동 37-27번지 일원 춘천시립청소년 도서관 ~ 삼천사거리간 도로확·포장공사인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대로3류3호선, 공간시설: 광장10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안) 열람공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춘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춘천시 삼천동 37-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 춘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대로3류3호선, 공간시설:광장10호)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삼천사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3. 면적 또는 규모(변경)

가. 면 적

－ 기정 : 4,274㎡

－ 변경 : 4,282㎡

나. 규 모

－ 대로3류3호선 : B=24.1m, L=152.4m, A=3,335㎡ (기정)

B=24.1m, L=152.4m, A=3,343㎡ (변경)

－ 광장10호 : A=939㎡ (변경없음)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춘천시장(도로과)

나. 주 소 :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일 후

나. 준공예정일 : 2026. 12. 31.

6. 열람의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 6. 5. ~ 2025. 6. 19. (14일간)

나. 장 소 : 춘천시청 도시계획과(☎033-250-3175)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가. 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구분	위치	지번	지목	대 장 면 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대로 3-3	광장 10	계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종류	
1	변경 없음	삼천동	33-1	도	3,968	-	192	192	춘천시					
2	변경 없음	"	33-2	도	770	-	249	249	국 (건설부)					
3	변경 없음	"	19-5	도	16,454	1,381	285	1,666	국 (건설부)					
4	변경 없음	"	25-2	도	251	21	154	175	국 (건설부)					
5	변경 없음	"	25-3	도	46	-	46	46	춘천시					
6	변경 없음	"	37-22	도	1,311	1,271	9	1,280	춘천시					
7	변경 없음	"	37-58	도	19	15	4	19	춘천시					
8	기정	"	37-29	대	105	14	-	14	정재근	조양동 6-170				
	변경	"	37-106	대	14	14	-	14	정재근	조양동 6-170				
9	기정	"	37-27	전	344	26	-	26	필주란	동산면 영서로 945				
	변경	"	37-105	전	24	24	-	24	필주란	동산면 영서로 945				
10	변경 없음	"	37-89	도	21	21	-	21	우리자산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이인선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813(삼천동)	근저당권	
11	기정	"	37-88	대	35	32	-	32	우리자산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이인선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813(삼천동)	근저당권	
	변경	"	37-88	대	35	35	-	35	우리자산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2	기정	"	37-84	대	434	252	-	252	우리자산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이인선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813(삼천동)	근저당권	
	변경	"	37-109	대	258	258	-	258	우리자산신 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13	변경 없음	"	24-2	도	73	21	-	21	춘천시					
14	변경 없음	"	24-15	도	32	3	-	3	춘천시					
15	변경 없음	"	37-56	도	98	16	-	16	국	춘천시				
16	기정	"	37-48	대	207	32	-	32	김성원	춘천시 방송길 70, 103동 703호 (온의동, 온의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	동춘천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77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	37-107	대	31	31	-	31	김성원	춘천시 방송길 70, 103동 703호 (온의동, 온의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	양병섭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 26-2	근저당권	
17	기정	"	산8-5	임	2,088	66	-	66	김성원	춘천시 방송길 70, 103동 703호 (온의동, 온의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	동춘천농업 협동조합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동내로 77	근저당권, 지상권	
	변경	"	산8-15	임	68	68	-	68	김성원	춘천시 방송길 70, 103동 703호 (온의동, 온의롯데캐슬스카이클래스)	양병섭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 26-2	근저당권	
18	변경 없음	"	산8-4	도	1,799	164	-	164	춘천시					
합 계						3,335	939	4,274						
						3,343	939	4,282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원주시 공고 제2025-1418호

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1-22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1-22호)사업 공사가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원 주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원주시 학성동 355-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원주 도시계획시설(소로1-22호) 조성사업
- 명칭: 학성동 소로(1-22) 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원주시장(건설과장)
- 주소: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결정폭원(m)	연장(m)	금회시행	비고
소로1-22호	10	107	B=10m, L=23m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2023. 10. 27. ~ 2025. 6. 5.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강릉시 고시 제2025-201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주문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고시 제2025-92(2025. 3. 12.)호로 임대주택사업계획 승인 고시되어 의제 처리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주문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고시된 사항은 토지e음(<http://www.eum.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30일

강릉시장

1. 고시 취지 : 강릉시 고시 제2025-92(2025. 3. 12.)호에 따라 임대주택사업계획 승인 고시되어 의제 처리된 강릉 도시관리계획(주문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에 대하여 지형도면 고시 하고자 함

2. 위 치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1046-2 일원

3.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문4지구	주문리 1046-2 일원	-	증) 12,522	12,52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신설	①	주문리 1046-2 일원	12,522	• 원활한 공동주택건설 및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4.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조서

가.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522	—	12,522	100.00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도지역별 편입 면적을 기재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은 변경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1) 도로 총괄표

구분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2	244 (-)	1,845 (-)	—	—	—	1	152 (-)	1,220 (-)	1	92 (-)	625 (-)
변경	합계	3	221 (221)	2,496 (2,496)	1	36 (36)	370 (370)	1	90 (90)	1,538 (1,538)	1	95 (95)	588 (588)
기정	중로	—	—	—	—	—	—	—	—	—	—	—	—
변경	중로	1	90 (90)	1,538 (1,538)	—	—	—	1	90 (90)	1,538 (1,538)	—	—	—
기정	소로	2	244 (-)	1,845 (-)	—	—	—	1	152 (-)	1,220 (-)	1	92 (-)	625 (-)
변경	소로	3	131 (131)	958 (958)	1	36 (36)	370 (370)	—	—	—	1	95 (95)	588 (588)

※ ()는 사업대상지 내 급회 개설하는 연장, 면적임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 정	-	-	-	-	-	-	-	-	-	-	-	
변 경	중 로	2	18	15~ 16.9	국지 도로	90 (90)	중1-2 주문리 1044-27	주문리 1050-6	일반 도로	-	-	
기 정	-	-	-	-	-	-	-	-	-	-	-	
변 경	소 로	1	41	10	국지 도로	36 (36)	소2-24 주문리 1050-6	주문리 1046-2	일반 도로	-	-	
기 정	소 로	2	24	8	국지 도로	152 (-)	중1-1 주문리 330-1	주문리 1044-4	일반 도로	-	강원도 고시 제1987-43호 (1987. 4. 18.)	
변 경	소 로	2	24	8	국지 도로	116 (-)	중1-1 주문리 330-1	주문리 1050-6	일반 도로	-	강원도 고시 제1987-43호 (1987. 4. 18.)	
기 정	소 로	3	17 3	6.5	국지 도로	92 (-)	중1-2 주문리 1044-27	소로2-24 주문리 1050-6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제1987-43호 (1987.4.18.)	
변 경	-	-	-	-	-	-	-	-	-	-	-	
기 정	-	-	-	-	-	-	-	-	-	-	-	
변 경	소 로	3	38 4	6	국지 도로	95 (95)	주문리 1057-11	주문리 1056-8	일반 도로	-	-	

※ ()는 사업대상지 내 금회 개설하는 연장임

(3)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소로3-173	중로2-18	- 도로 폭원 확장 - 기정 - 폭원:6.5m, 연장:92m - 변경 - 폭원:15~16.9m, 연장:90m	도로 폭원 확장
-	소로 1-41	- 도로 신규 개설 - 폭원:10m, 연장:36m	공동주택 진출입로에 기존 소로2-24호선 폭원이 좁다고 판단되어 중로2-18호선과 접하는 구간을 소로1-41호선으로 폭원확장 신규 개설
-	소로 3-384	- 도로 신규 개설 - 폭원:6m, 연장:95m	기존 마을안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규 결정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BL01	BL01	1-1	주문리 1046-2번지 일원	10,02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BL02	BL02	2-1	주문리 1050-5번지 일원	370	도로 (진출입로를 위한 폭원 확장 및 개설)
		2-2	주문리 1045-2번지 일원	1,538	도로 (진출입로를 위한 폭원 확장 및 개설)
		2-3	주문리 1057-11번지 일원	588	도로 (통과도로의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 결정)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결정내용
BL01	1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20% 이하 (법정:제2종일반주거지역-60%이하)
		용적률	○250% 이하 (법정: 제2종일반주거지역-250%이하)
		높이	○29층 이하
		배치	○지형, 일조, 경관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주동은 경관적측면을 고려 한방향으로 75m 이하를 권장함
		색채	○강릉시 경관기본계획에 의한 가이드라인 준용
		건축선	—

주: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참조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조서

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	■ 교통처리 •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되도록 설치 - 보행공간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의 비율을 최대한 확보 -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연결성이 용이하도록 설치 • 주차시설 -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담장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하되 인접대지 또는 인접도로의 소음저감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형단차극복, 안전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으며, 투시형 또는 친환경적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마감하는 것을 권장 ■ 단지내 조경 - 조경 면적은 관련법규상 기준 면적이상 충분히 확보 - 상징적 주제공원은 1개소 이상 조성할 것을 권장 ■ 기타사항 - 단지 내 주요 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수집공간을 설치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 - 사업시행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안내판, 포장패턴 및 가로시설물 등 종합적인 디자인계획을 가능한 수립하여 설치	

주: 상기 내용의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지침도를 참조

2)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계획

구분	위치	면적(m ²)	내용
1	주문리 1063-5 일원	551	공동주택 단지 내 우수관로(국도7호선 횡단 연장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함
2	주문리 1046-2 일원	869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소로 1-41호선, 소로 3-384호선과 연결을 하여 인근 주민의 통행권 보장

주: 구분지상권은 임대주택 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 시 설정

4. 강릉 도시관리계획(주문4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 실음 생략

삼척시 고시 제2025-129호

삼척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광장)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삼척시 고시 제2024-268호(2024. 12. 27.)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삼척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광장)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변경- 기간연장) 작성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6일

삼 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당저동 14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광장) 사업

나. 명칭 : 당저광장 조성사업 - 제1종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가. 사업의 면적: 4,373㎡

나. 사업의 규모

구 분	건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동수	구 조
기 존	주1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42.55	2,022.95	지1층, 지상1층 /1동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증 축 (금회 건축사항)	주2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37.72	37.72	1층/1동	철근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합 계			80.27	2,060.67	2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삼척시장(전략사업과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가. 사업착수일: 건축(증축) 협의일[문서번호: 건축과-44650(2024. 12. 17.)호]

나. 준공예정일: 2025. 12. 31.

【 ※ 변경사항(준공예정일): [기정] 2025. 6. 10. → [변경] 2025.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변경없음)

순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위치	지번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당저동	165-4	대	223.0	188.0	삼척시	공		
2	당저동	165-5	대	153.0	153.0	삼척시	공		
3	당저동	164-3	대	333.0	333.0	삼척시	공		
4	당저동	186-15	도	62.0	60.0	삼척시	공		
5	당저동	145-6	대	446.0	380.0	삼척시	공		
6	당저동	146-1	대	1,012.0	1,012.0	삼척시	공		
7	당저동	145-3	대	1,575.0	1,531.0	삼척시	공		
8	당저동	144-6	대	317.0	317.0	삼척시	공		
9	당저동	149-7	대	210.0	210.0	삼척시	공		
10	당저동	150-5	대	189.0	189.0	삼척시	공		
합 계				4,520	4,373				

※ 기타(물건 등):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 등 일체를 포함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본 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4)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 공고 제2025-921호

영월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실시계획인가(변경)(안) 공람공고

1. 영월군 고시 제2010-94호(2010. 11. 26.)로 최초 결정되고, 영월군 고시 제2024-228호(2024. 12. 5.)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영월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 합니다.
2. 사업 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우리 군(지역개발실 033-370-2116)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

영 월 군 수

가. 위치 (변경 없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북면 영월로 1339-43 일원 (영월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내)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 종류
 - 기정 : 영월 군계획시설 사업(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재활용시설, 음식물폐기물 저장시설, 야적장)
 - 변경 : 영월 군계획시설 사업(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재활용시설, 음식물폐기물 저장시설, 야적장, 관리동, 차고)
- 명칭
 - 영월군 생활자원회수센터·음식물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명 : 영월군수(환경위생과)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영월군청 환경위생과)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승인일 ~ 2025. 12. 31.

마.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토지이용현황

(단위 : m²)

구분		계	전	장	도	임	잡	답	비고
필지수	기정	17	6	1	1	9	—	—	
	변경	22	7	1	2	9	1	2	
지목별	기정	7,358	2,157	20	514	4,667	—	—	
	변경	11,009	2,457	20	785	4,667	552	2,528	
이용 현황	기정	7,358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폐기물 저장시설, 야적장 조성						
	변경	11,009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폐기물 저장시설, 야적장, 차고, 관리동 조성						
구성비		10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관계인의 주소 성명(변경)

○ 영월군 생활자원회수센터 (변경)

－ 기정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문곡리	203	전	7,402	675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2	문곡리	542	전	446	446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3	문곡리	546	전	949	470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4	문곡리	554-1	도로	2,661	514	국유지	건설부	공유지
5	문곡리	547	임야	618	299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6	문곡리	산173-1	임야	1,497	1,057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7	문곡리	산172-1	임야	2,168	1,405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8	문곡리	543	장	1,094	20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합 계				15,741	4,886			

－ 변경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문곡리	203	전	7,402	675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2	문곡리	542	전	446	446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3	문곡리	546	전	949	470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4	문곡리	554-1	도로	2,661	514	국유지	건설부	공유지
5	문곡리	547	임야	618	299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6	문곡리	산173-1	임야	1,497	1,057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7	문곡리	산172-1	임야	2,168	1,405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8	문곡리	543	장	1,094	20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합 계				16,835	4,886			

○ 음식물폐기물 저장시설 (변경없음)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문곡리	산174	임야	3,467	73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2	문곡리	산174-1	임야	302	109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3	문곡리	203	전	7,402	262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합 계				11,171	444			

○ 야적장 (변경없음)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문곡리	205	임야	936	749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2	문곡리	206	임야	1,031	240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3	문곡리	산174	임야	3,467	67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4	문곡리	산174-2	임야	868	668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5	문곡리	203	전	7,402	303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6	문곡리	211	전	1,183	1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합 계				14,887	2,028			

○ 차고 (변경(신설))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문곡리	541	전	3,795	300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합 계				3,795	300			

○ 관리동 (변경(신설))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문곡리	549	답	526	526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2	문곡리	550	답	2,377	2,002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3	문곡리	551	잡종지	1,739	552	군유지	영월군	공유지
4	문곡리	554-1	도로	2,661	271	국(건설부)	-	국유지
합 계				7,303	3,351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평창군 공고 제2025-856호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67-4번지 일원에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공람 ·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30일

평 창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안)

○ 계획내용 : 대화면의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대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노외주차장 5호 면적을 일부 변경(감소)하고자 함

○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안)

1.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변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5	노외주차장	대화면 대화리 967-4대 일원	2,067	감) 959	1,108	2017.5.4. (평고17-53)	대화 도시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노외주차장	◦ 면적감소 - 면적 : 2,067㎡ → 1,108㎡ 감) 959㎡	◦ 대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주차장 면적 일부감소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평창군 도시과(본청 3층), 대화면사무소
-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3. 의견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함에 제출

4. 기타사항

- 관련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14일간 주민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과(☎ 033-330-2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끝.

주민의견 제출서

계 획 명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안)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67-4번지 일원 (대화도시지역 노외주차장 5호, 면적 : 2,067㎡ → 1,108㎡ / 감 959㎡)		
계획시행자	평창군		
의견제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상기 본인은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